

정보공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일본 -

김래영



지역법제 연구 15-16-④-7

정보공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일 본-

김 래 영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정보공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일 본-

A Comparative Law study on the
Legislation of Opening of Information

-Japan-

연구자 : 김래영(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Kim, Rae-Young

2015. 10. 31.

요약문

I.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정보공개법을 시행한 일본의 법제와 판례를 살펴보고자 함.
 - 이를 통하여 우리 법 개정시 시사점을 얻을 수 있고, 법원으로서도 참고할 사항이 있다고 사료됨.
- 일본의 정보공개현황, 불복현황(행정, 사법절차 포함) 등에 대하여도 살펴보고자 함.
 -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정보공개의 실무적 보완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됨.

II. 주요 내용

- 일본 정보공개법제는 행정기관과 독립행정법인에 대하여 따로이 규율하고 있음. 법 내용 자체는 동일함.
- 법률에서 외국인도 정보공개 주체라고 명시.
- 각급 재판소와 의회를 정보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기타 내용은 법조문이나 판례가 우리나라의 것과 유사함. 다만 판례는 정보공개를 우선하는 듯하나, 재3자의 프라이버시 등을 이유로 이를 제한하는 경향임. 그 이론구성이 우리나라 판례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평가됨.
- 정보공개현황의 공표는 그 내역별로 상세히 함. 우리나라에서 참고하여야 함.

Ⅲ. 기대효과

- 법제 자체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앞서나, 판례의 이론구성 및 정보공개현황의 공표내역 등은 일본이 앞선다고 평가되므로 이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 반영할 수 있음.

▶▶ 주제어 : 정보공개, 외국인, 프라이버시, 정보공개현황

Abstract

I . Background and objective

- Japan is the second country(following Korea) in Asia that legislates and enacts Information Disclosure Act.
- To research Japanese Information Disclosure Act and check the related judicial precedent.
- To find the publication of the present state of Japanese Information Disclosure.
- We can find suggestions in amending Act and reasoning findings through this study.

II . Contents

- Japanese Information Disclosure Acts respectively regulat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Independent Administrative Corporation. But their specific provisions are much the same.
- The Act explicitly includes a foreigner as a subject of Information Disclosure, whereas excludes Courts and Assembly as a object.

- The other provisions of the Act and the tendency of the judicial precedent are similar to those of Korea. Japanese Court prefer Information Disclosure in appearance, but have a tendency to dismiss Information Disclosure Claim on the reason of privacy of the third Party.
- It is estimated that Japanese judicial precedent effect Korean judicial precedent.
- We may refer to the publication pt the present state of Japanese Information Disclosure which is very detailed in specifics.

III. Expectation

- Legal system and specific provisions are go in advance of those of Japan. Whereas We are second to Japan in reasoning of the judicial precedent and the publication pt the present state of Japanese Information Disclosure, so we shall refer and reflect of the Japanese merits.

▶▶ Key Words : information disclosure, foreigner, privacy, publication
of the present state of information disclosure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5
제 1 장 서 론	11
제 1 절 일본의 정보공개법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11
제 2 절 연구의 범위	12
제 2 장 일본의 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 경위 및 현행법 구조	15
제 1 절 정보공개법 제정 및 시행 경위	15
제 2 절 현행법 구조	16
제 3 장 일본 정보공개법의 내용	17
제 1 절 서 언	17
제 2 절 총 칙	17
1. 목 적	17
2. 대상기관	18
3. 정보공개대상(제2조 제2항)	20
제 3 절 행정문서의 개시	22
1. 개시청구권자	22
2. 개시청구 절차	23

3. 불개시정보	24
4. 부분개시	34
5. 재량적 개시	36
6. 행정문서의 존부에 관한 정보	36
7. 개시청구에 대한 조치	37
8. 개시결정기한	39
9. 사안의 이송	41
10. 제3자의 의견제출	42
11. 개시의 실시	45
12. 타 법령에 의한 개시실시와의 조정	46
13. 수수료	46
14. 권한의 위임	47
제 4 절 개시결정등에 대한 이의	48
1. 심사회에의 자문	48
2. 불복신청자에 대한 통지	49
3. 제3자의 불복신청 기각	49
4. 소송 이송의 특례	50
5. 기 타	50
제 4 장 일본정보공개현황	53
제 1 절 행정기관의 경우	53
1. 2013년 행정기관정보공개법의 시행 상황	53
제 2 절 독립행정법인등의 경우	65
1. 2013년 독립행정법인 등 정보공개법의 시행 상황	65
제 3 절 요약	79

제 5 장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81
1. 우리나라와 일본이 정보공개청구법 비교표	81
2.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86
제 6 장 결 론	89
참 고 문 헌	91
<부 록>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95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일본의 정보공개법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1998. 12. 31. 법률 제5242호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¹⁾ 1998. 1. 1.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아시아 최초의 정보공개법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1999년 정보공개법을 제정하여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다른 분야의 법제가 일본의 것을 벤치마킹 내지는 참고로 하여 제정된 것과는 달리, 정보공개법 분야의 법제는 우리나라의 것이 오히려 일본 법제의 전범(典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의 제정, 시행이 늦었다고 하여 법제의 정비와 실제 운영의 면에서도 우리의 그것에 비하여 늦었다고 할 수는 없다. 정보공개청구권자, 정보공개 대상기관, 비공개정보의 범위 등과 관련한 규정 및 실제 정보공개 운영현황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그것보다 오히려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²⁾ 따라서 일본의 정보공개법제는 우리나라의 정보공개 법제의 정비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고, 현행 정보공개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연구함에 있어서 일본 정보공개 법제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1) 제정, 공포된 당시의 법명(法名) 그대로를 나타내기 위하여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2) 이러한 점은 독일의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인 정보자유법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늦은 2006년에 시행되었음에도 독일에서의 논의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독일의 논의에 대하여는 본 연구 독일편 참고; 또한 비공개정보의 범위와 관련한 규정이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다는 것이 반드시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표현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 국민주권실현이나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정보공개 법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³⁾ 일본의 정보공개 법제가 우리나라보다 늦게 시행된 것이 일차적인 이유이지만, 일본의 정보공개 법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자도 극소수인 것으로 파악된다.⁴⁾

주 4)에 열거되어 있는 연구들은 일본의 정보공개 법제 및 이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는데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보공개법제 전반에 대한 소개 및 실제 운영현황에 대하여는 상세한 소개를 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제2장에서는 일본 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 경위 및 현행법 구조를 살펴볼 것이다. 한 나라의 법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는 법의 내용에 숙지 이전에 법 제정의 토대가 되는 역사적, 문화적 고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본의 현행 정보공개 법제의 구조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제3장은 본 연구의 핵심으로 일본 정보공개법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자에 따라서 타 외국 정보공개법 전문(全文)을 번역하여 제공하기도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본 장 내용 고찰에서 일본 정보공개법의 전문을 제공하고 관련 판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다만 뒤에서

3) 물론 우리나라 및 일본 모두에서 정보공개법이 제정되기 전에 일본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이지만) 정보공개 제도를 소개하고 이의 도입방안을 논의한 글로는, 한규인, “일본에 있어서 정보공개의 제도화와 한국에서의 제도 도입전략”, 한국행정학보, 제27권 제4집, 1993

4) 김배원, “일본의 정보공개제도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2권, 2000; 채우석, “일본정보공개법의 의의와 과제”, 숭실대학교 법학논총 제13집, 2003, 채우석, “最近의 情報公開判例 : 日本의 最高裁判所의 判例를 中心으로”, 사회과학논총 제6권, 2003, 채우석, “환경행정(環境行政)과 정보공개(情報公開)”, 환경법연구 제29권 제2집, 2007; 박정훈, “일본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제비에 관한 정보공개의 판례법리”, 공법학연구 제10권 제2호, 2008 등이 있다.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정보공개 법제는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따라 ‘공공기관’과 ‘독립행정법인’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정보공개법을 규정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 그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는 양자가 거의 동일하므로 전문을 제공하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한정한다.

세부 내용에서는 총칙, 행정문서의 개시,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로 나누어 설명한다.

제4장 역시 본 연구의 또 다른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일본의 정보공개 현황을 살펴본다.⁵⁾

제5장은 본 연구의 결론이라 할 수 있다. 일본 정보공개법제의 내용 및 판례에서 얻게 되는 시사점, 제4장의 실제 운영현황에서 얻게 되는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 정보공개 법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5) 이러한 실제 운영 현황 고찰은 제5장의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부분에 반영될 수 밖에 없다.

제 2 장 일본의 정보공개법의 제정 · 시행 경위 및 현행법 구조

제 1 절 정보공개법 제정 및 시행 경위

일본에서는 1972년의 ‘외무성비밀전문누설사건’,⁶⁾ 1976년 록히드 사건,⁷⁾ 1979년 더글라스 사건 등 일련의 의혹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에 중앙정부보다는 지방 정부 차원에서 알 권리의 입법화가 시도되었다. 1982년 3월에 山形縣 金山町이, 같은 해 10월에 神奈川縣이 각 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였다.

중앙정부차원에서는 1994. 2. 15. 내각결정으로 행정정보의 공개에

6) 1971년부터 1972년 사이에 있었던 미국과 일본의 오키나와 반환 교섭 당시, 니시아마 다키치(西山太吉) 마이니치(毎日)신문 기자가 “미국이 오키나와 영유권을 일본에 반환할 때 미군 용지의 원상회복 비용 400만 달러를 일본이 부담하기로 한 밀약이 있었다”고 폭로한 사건이다. 강경근, 국익관련보도의 사법적 한계, 언론중재 제39권(91.6), 언론중재위원회, 1991(http://www.pac.or.kr/kor/pages/?p=60&magazine=M01&cate=MA02&nPage=10&idx=528&sub_idx=4031&m=read&f=s), 최종접속일:2015.10.30)

7) 1976년 2월 미상원의교위원회 다국적기업소위원회에서 록히드사가 일본에서의 항공기 판매 공작자금으로 마루베니상사를 통하여 일본 정부의 고관들에게 200만 달러를 주었다는 증언이 있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일본의 여당은 전후 최대의 혼란에 직면하게 되었다. 4월 록히드사건에 대한 미국측의 미공개 자료가 일본측에 전달된 이후 6월부터 마루베니·젠니구 등의 간부가 계속 체포되고, 7월 27일에는 전(前) 수상 다나카카구에이[田中角榮]가 체포되었다. 다나카의 혐의는 전일본항공(ANA)에 록히드항공기를 구입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5억 엔의 뇌물을 마루베니상사를 통하여 받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가·고급관료·대기업이 제각기 이익을 쟁기려는 정경유착관계에서 발생한 구조적 오직(汚職)사건으로 ‘청렴한 미키’를 자신의 이미지로 내세우고 있던 수상 미키다케오[三木武夫]도 여론을 배경으로 사건규명에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자민당 간부들 사이에서는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면 정치·경제구조 그 자체의 부패가 폭로되어 보수정치체제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되었고, 미키를 수상직에서 끌어내리려는 정치공작이 시도되었다. 이에 대하여 미키는 여론의 지지를 기반으로 반대파 각료를 파면하고 국회해산이라는 강경한 입장으로 대응하여 위기를 모면하였다. 이 사건으로 자민당 내 고노·요헤이 등 6명의 의원이 금권정치를 비판하고 탈당하여 ‘신자유클럽’을 결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자민당과 내각을 지배한 전 수상 다나카의 신화를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두산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4026&cid=40942&categoryId=31787>, 최종접속일: 2015.10.30)

관한 제도에 관하여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하였는데, (가칭) 행정개혁 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보공개제도를 추진하였다. 1994. 12. 19. 행정개혁 위원회설치법에 따라 총리부 산하에 행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정 기타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로 하였다.

행정개혁위원회는 1998. 3. 27. 행정기관정보공개법안 및 동정비법안을 각의(閣議)로 결정하고 국회에 제출하였다.

1999. 4. 28. 위 법안들은 참의원 본회의 통과하였고(투표총수 231 중 반대 1), 같은 해 5. 7. 중의원 본회의에서 전원일치로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에 이어 두 번째로 정보공개법이 성립하게 되었다. 5. 14. 행정기관정보공개법(법률 제42호), 동 정비법(법률 제43호) 공포되었고 이들 법률은 약 2년 후인 2001. 4. 1.부터 시행되었다.

위 행정기관정보공개법이 법명(法名) 그대로 행정기관만을 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정보공개 대상기관 확대를 위하여 2001. 11. 28. 참의원 본회의에서 독립행정법인등정보공개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됨에 따라 법률로 성립되었다. 위 법률은 같은 해 12. 5. 공포되었고, 2002. 10. 1.부터 시행되었다.

제 2 절 현행법 구조

일본에서는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따라 법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는 행정기관이나 기타 독립행정법인 등이냐에 대한 차이일 뿐, 청구권자·청구절차·개시절차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양자가 동일하다. 위 법률들의 정식 명칭은 다음과 같다.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그것이다.⁸⁾

8)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외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2007. 5. 25. 제정 법률 제8492호, 2008. 5. 26. 시행)이 있다.

제 3 장 일본 정보공개법의 내용

제 1 절 서 언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본의 정보공개법제는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따라 법이 나뉘어져 있을 뿐, 그 내용은 동일하므로 대상기관 이외에는 양자를 묶어서 살펴보기로 한다.⁹⁾

제 2 절 총 칙

1. 목 적

제 1 조(목적) 이 법률은 국민주권이념에 따라 행정문서에 대한 개시청구권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를 도모하고 정부의 제반활동을 국민에 설명하는 책무를 다하게 함과 동시에, 국민의 정확한 이해와 비판 아래 공정하고 민주적인 행정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 정보공개법은 우리 정보공개법 제1조 및 제3조에서 정보공개 제도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복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정보공개가 알 권리를 위하여 복무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학설상으로는 알권리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보는 견해도 있다.¹⁰⁾

9) 아래에서 기술하는 법조문은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것임을 밝혀둔다.

10) 일본에서도 알권리는 일본국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松井茂記, 情報公開法(제2판), 有斐閣, 2003년, 27頁

2. 대상기관

제 2 조(정의) ① 이 법률에서 행정기관이라 함은 아래에 규정된 기관을 말한다.

1. 법률규정에 의하여 내각에 설치된 기관(내각부를 제외한다) 및 내각 관할 하에 설치된 기관
2. 내각부, 궁내부 및 내각부설치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관 (이들 기관 중 제4호 정령에 규정된 기관에 설치된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정령에 규정된 기관은 제외한다)
3. 국가행정조직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기관(제5호 정령에 규정된 기관에 설치된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정령에 규정된 기관은 제외한다)
4. 내각부설치법 제39조, 제55조 및 궁내청법 제16조 제2항에 규정된 기관 및 내각부설치법 제44조 및 제56조(궁내청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특별기관으로서 정령에 규정된 기관¹¹⁾
5. 국가행정조직법 제8조의2에 규정된 시설, 기관 및 동법 제8조의3에 규정된 특별기관으로서 정령에 규정된 기관¹²⁾
6. 회계검사원

위 규정을 살펴보면 정보공개대상기관에 국회와 재판소가¹³⁾ 제외되어 있다. 법명칭이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공개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명칭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인 것과 비교된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우리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를 정보대상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일본국헌법 제57조가 국회회의의 공개원칙을, 제82조가 재판공개의 원칙을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위 헌법규정에 따라 국회와 재판소도

11) 본 호의 특별기관을 행정기관보유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조 제1항은 ‘경찰청’으로 명시하고 있다.

12) 본 호의 특별기관을 행정기관보유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조 제1항은 ‘검찰청’으로 명시하고 있다.

13) 따라서 최고재판소와 각급재판소 모두 정보공개대상기관에서 제외되어 있다.

정보공개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그러나, 국회나 재판소에 관한 문서를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정보공개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가령 장관의 국회 답변을 위한 자료, 상정문답집(想定問答集), 판결서나 재판기록 등이 그것이다.¹⁴⁾

위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기관은 모두 43곳이다. 구체적인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제1호(5곳) : 내각관방, 내각법제국, 원자력방재회의, 인사원 및 부흥청, 국가안전보장회의,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추진전략본부, 도시재생본부, 구조개혁특별구역추진본부, 지적재산전략본부,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 지역재생본부, 우정민영화추진본부, 중심시가지활성화본부, 도주제특별구역추진본부, 총합해양정책본부, 우주개발전략본부, 총합특별구역추진본부, 국토강인화(強靱化)추진본부,¹⁵⁾ 사회보장제도개혁추진본부¹⁶⁾

제2호(7곳) : 내각부, 궁내청, 공정취인위원회, 국가공안위원회, 금융청, 소비자청 및 특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3호(28곳) : 총무성, 공해등조정위원회, 소방청, 법무성, 공안심사위원회, 공안조사청, 외무성, 재무성, 국세청, 문화고학성, 문화청, 후생노동성, 중앙노동위원회, 농림수산성, 임야청, 수산청,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특허청, 중소기업청, 국토교통성, 운수안전위원회, 관광청, 기상청, 해상보안청, 환경성, 원자력규제위원회 및 방위성

제4호(1곳) 경찰청

제5호(1곳) 검찰청

제6호(1곳) 회계검사원

14) 松井茂記, 前掲書, 68頁; 그러나 의회가 작성한 문서, 판결서 이외의 재판소 작성 자료가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15) ‘강인’은 ‘強靱’이다.

16) 국가안전보장회의 이후의 기관은 사무처리는 독립적으로 하나, 조사결과에서는 내각관방의 수에 포함하여 정리하고 있다.

한편, 독립행정법인등정보공개법상의 공개대상기관은 2014년 4월 1일 현재 202법인이다.¹⁷⁾ 의약기반연구소,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등 독립행정법인 98법인, 동경대학, 북해도대학 등의 국립대학법인 86곳, 인간문화연구기구, 자연과학연구기구, 고에너지가속기연구기고, 정보·시스템연구기구를 대상으로 하는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 4곳,¹⁸⁾ 일본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 일본연금기구, 일본중앙경마회 등 특수법인 9곳, 일본은행 등 허가법인 4곳 및 기타의 법인(일본사법지원센터) 1곳이다.

3. 정보공개대상(제2조 제2항)

② 이 법률에서 행정문서라 함은 행정기관의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였거나 취득한 문서, 도면 및 전자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기타 사람의 지각에 의하여 인식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해당행정기관의 직원이 조직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는 제외한다.

1. 관보, 백서, 신문, 잡지, 서적 기타 불특정다수의 사람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발행된 것.
2. 공문서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항에 규정된 특정역사공문서 등.
3. 정령에 규정된 연구소 기타 시설에 있어서는 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역사적, 문화적, 학술연구용 자료로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것(전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다.)

일본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행정문서를 ‘문서, 도화 및 전자적 기록’이라고 하여 정보 자체가 아니라 기록매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가 ‘문서·도면·사진·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이라고 하여 정보 자체를 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¹⁹⁾

17) 「독립 행정 법인 등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 법인 목록」(2014년 4월 1일 기준)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121077.pdf, 최종접속일: 2015..10.30.)

18) 상기 법인들은 모두 이사회 등의 임명을 국가가 하거나 또는 정부출자기관이다.

19) 그러나 지방공공단체의 조례에서 문서 등 매체 이외에 매체에 기록된 정보를 포함

또한 결제,²⁰⁾ 공람 등 사안처리절차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행정기관의 직원이 조직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면 널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만 조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 가령 특정 검사실에서 내사 내지는 수사 단계에서의 서류는 조직적 이용이라고 하기에는 불충분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²¹⁾

한편 법해석에 있어서 문제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행정기관의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였거나 취득한 문서 등을..... 해당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가령 어느 행정기관의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작성하고 취득한 문서라 하더라도 타 기관이 관리하고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문서가 정보공개 대상이 될 것인가의 문제이다.²²⁾

이에 대하여 일본 최고재판소는 德島縣議會文書事件에서 법적 권한설을 채택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는데,²³⁾ 판결이유는 “공개대상이 되는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예산집행에 따른 문서관리의 법적 권한이 있는가의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문서에 대한 현실적 지배, 관리 유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현의 회가 보관하고 있는 지사의 예산집행 관련 문서는 공개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²⁴⁾

정보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각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20) 일반적으로 일을 처리하여 끝낸다는 의미의 ‘결제 (決濟)’라는 단어를 사용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승인한다는 뜻의 ‘결재 (決裁)’를 사용하더라도 별반 차이가 없다고 사료된다.

21) 한편, 행정기관의 직원이 보관하고 있더라도 개인적으로 작성하였거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문서 등도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22) 의회나 검찰 등이 보관, 관리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23) 법적권한설은 보유문서의 법적관리권한을 중시하는 반면, 관리실태설은 사실상 누가 보관하고 있는가를 중시한다. 가령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집행에 관련된 문서를 의회나 재판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 전자에 의하면 형식적 보관권한을 중시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유문서가 되는 반면, 후자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비공개대상기관인 의회나 재판소가 보관하는 문서가 된다.

24)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 2001. 12. 14. 민집55권7호1567頁

제1호의 문서들은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발행된 문서’들로서 일반인이 쉽게 구매가능한 정부분서이므로 개시 청구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문서들로 분류된다.

제2호 및 제3호의 자료는 ‘역사적, 문화적 자료·학술연구용자료’를 말하는데,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국립민족학박물관, 국립역사민속박물관 및 기타 공문서관,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이 보유하는 자료 중 총리대신이 역사적, 문화적 자료 또는 학술연구용 자료로서 적절한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 3 절 행정문서의 개시

1. 개시청구권자

제 3 조(개시청구권) 누구든지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전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정령에 규정된 기관은 그 기관별로 정령²⁵)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행정문서의 개시를 청구할 수 있다.

일본 정보공개법은 청구권자로 ‘누구든지(何人も)’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이 정보공개청구권자로 “모든 국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²⁶⁾ 위와 같이 누구든지 라고 규정하고 있어, 일본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뿐 만 아니라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25) ‘정령(政令)’은 총리령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대통령령에 해당한다. 정령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경찰청장관, 국립대학학장, 대학공동이용기관장, 최고검찰청에서는 검찰총장, 고등검찰청에서는 검사장, 지방검찰청에서는 檢事正이 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26) 다만 우리 정보공개법은 제5조 제2항에서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5조는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청구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논의가 있는 바, 법정대리인을 통하여서는 당연히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지방공공단체가 조례로 일정한 연령까지는 법정대리인 통하여서, 그 이상의 연령부터는 미성년자 단독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고 본다.

2. 개시청구 절차

제 4 조(개시청구 절차) ① 전조에 의한 개시청구(이하 ‘개시청구’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개시청구서’라 한다)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시청구를 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거소 및 법인 기타 단체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행정문서의 명칭 기타 개시청구와 관련된 행정문서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 ② 행정기관의 장은 개시청구서에 형식상의 불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시청구를 한 자(이하 ‘개시청구자’라 한다)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개시청구자에 대하여 보정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 제2호의 ‘행정문서의 특정’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한다. 행정문서의 명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일반 국민인 청구권자로서는 정보공개 대상이 된 행정문서의 정확한 명칭을 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직원이 청구서에 기재된 사항을 기초로 하여 검색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만 특정하면 동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본다. 공개대상 행정문서를 특정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책임이고, 개시청구권자에게는 행정기관이 합리적으로 노력하면 문서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기재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본조 제2항이 위와 같이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내에 일본의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문헌

들은 모두 정보공개청구는 문서주의에 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행정절차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수반한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대상절차를 정하는 성령(省令)²⁷⁾ 제3조는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신청 등】이라는 표제 하에 제1항에서 “정보통신기술이용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여 할 수 있는 신청은 행정기관정보공개법 및 행정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의 규정에 기한 신청 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신청도 가능하다. 나아가 위 성령 제4조는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처분통지등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방법 이외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다고 한다.²⁸⁾ 다만 정보공개개시를 청구하는 서면은 일본어로 기재되어야 한다고 한다.²⁹⁾

3. 불개시정보

제 5 조(행정문서의 개시의무) 행정기관의 장은 개시청구가 있는 때에는 개시청구에 관계된 행정문서에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정보(이하 ‘불개시정보’라 한다)의 어느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시청구자에 대하여 해당 행정문서의 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래 각호에 규정된 불개시정보의 경우, 행정기관에 대하여 개시의무 면제를 규정한 것인지, 개시의 금지를 명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³⁰⁾

27) 2004. 3. 16. 일본총무성령 제39호; 성령은 우리나라의 부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행규칙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 보면 무방하다.

28) 松井茂記, 前掲書, 109頁

29) 宇賀克也, 新情報公開法 逐條解説, 有斐閣, 2002, 37頁;

30)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들 중 압도적 다수는 “공개할 수 없다” 또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는 규정형식보다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김배원, “일본의 정보공개제도-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2권, 14면; 한편, 우리

정보공개법의 제정취지가 국민주권의 실현 및 국민의 알권리에의 복무 임을 감안한다면 후자보다는 전자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후술 하는 바와 같이 개시 예외정보 중에서도 재량적 개시를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개시의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 개인에 관한 정보(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해당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외 한다)로서 해당정보에 포함된 성명, 생년월일 그 밖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는 없으나 공개됨으로써 개인의 권리가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 다만 아래 각목의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 규정 또는 관행에 따라 공개되거나, 공개가 예정되어 있는 정보
나. 사람의 생명, 건강, 생활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 해당 개인이 공무원 등(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독립행정법인통칙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특정독립행정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다), 독립행정법인등(독립행정법인등이 보유하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행정법인등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독립행정법인등을 말한다)의 임직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및 지방독립행정법인(지방독립행정법인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독립행정법인을 말한다)의 임직원을 말한다)인 경우에, 당해 정보가 그 직무수행에 관계된 정보인 때에는 당해 정보 중 당해 공무원등의 직무 및 당해직무수행의 내용에 관계된 부분

첫째, 개인에 관한 정보는 개인의 내심, 신체, 신분, 지위 기타 개인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관련된 사실, 판단, 평가 등 모든 정보가 포함한다. 즉, 개인에 관한 정보는 개인의 인격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에 한하지 않고, 개인의 지적창작물에 관한 정보, 조직체가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의 활동에 관한 정보,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정보, 기타 다른 개인과의 관련성을 갖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정보공개법 제7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호에 따라 비공개되는 개인정보에는 민감정보(개인의 사상, 양심, 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의 생활에 관한 정보(명부,³¹⁾ 개인의 주거, 개인의 자산에 관한 정보, 교육관련사항,³²⁾)

본호에서 말하는 개인에 死者도 포함되는가도 문제될 수 있는데, 사자 역시 명예권 등을 포함하는 인격권의 주체성을 부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자도 본호에서 말하는 개인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련된 문제로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이 개시청구를 한 경우 및 개인이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점이 논의된다. 이는 본조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조가 공개의무를 면제한 것인지, 공개금지를 명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전자의 경우에 정보공개가 인정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많으나, 이 경우에는 정반대로 해석하여야 한다. 전자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강제할 마땅한 근거가 없는 반면, 후자로 해석할 경우에는 그 입법취지가 개인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강제적으로 공개금지를 명한 반면, 이 경우에는 기본권 포기이론에 따라 그 보호되는 기본권의 주체가 스스로 공개를 인정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공개금지를 명할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개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둘째, 가목에서 말하는 공개되어있거나 공개가 예정된 정보는 프라이버시권이 개인정보가 비공개되어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공개된 정보에 관하여는 프라이버시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 근거한 조항이라고 한다. 법령상 공개되어 있는 정보는,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임원에 관한 정보,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 등을 예로 들 수

31) 모자건강수첩교부명부, 경자동차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소유자의 주소, 성명이 이에 해당한다고 한다.

32) 체벌사건에 관한 교장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보호자의 성명이 이에 해당한다고 한다.

있다. 관행적으로 공개되는 정보는 서훈자명부, 中央省廳의 과장상당직 이상의자의 직급 및 성명 등이다. 한편 공개되어 있는 정보란 개시청구 시점에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정보를 말하고 한정된 소수의 자만이 알 수 있는 정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나목에서 ‘사람의 생명, 건강, 생활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이익이 현실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그러한 이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예방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의 의미는 개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되는 법익과 개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후자가 우세한 경우를 말한다.

넷째, 법 제정 당시에는 여기서 말하는 개인에 공무원이 포함되는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었는데, 본 다목에 따라 일반적으로 정보 공개법 체계상 공무원도 포함한다는 전제 하에 일정한 정보에 관하여는 예외적으로 공개를 명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야 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는 공무원의 ‘職’은 공개되어야 할 것이나, 공무원의 성명은 위에서 언급한 ‘관행에 의하여 공개되는 경우’ 이외에는 공개되어서는 안된다고 한다.

개인정보와 관련하여서는 주로 교제비(관공비) 내지는 식대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었다. 물론 개인정보는 그 자체로 프라이버시나 영업 비밀이 되는 것은 차후에 논하기로 한다.

판례 경향은 교제비(관공비)에 관하여는 개별 문서를 상세히 검토하여 애초에 공개가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래 공개가 예정되지 않은 지출 상대방의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³³⁾ 그러나 식대와 관련하여서는 공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직위와

33) 大阪府知事交際費文書事件,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 1994. 1. 27. 민집48권1호53頁; 그러나 교제비청구와 관련하여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비공개로 되는 정보의 범위가 달라진다.

성명은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³⁴⁾ 즉 이 사건에서는 당해 정보가 그 직무수행에 관계된 정보이고, 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은 당해 공무원 등의 직무 및 당해직무수행의 내용에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이다.

2. 법인 그 밖의 단체(국가, 독립행정법인등, 지방공공단체 및 지방독립행정 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에 관련된 정보 또는 상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당해 사업에 관계된 정보로서 아래 각목에 규정된 것. 다만 사람의 생명, 건강, 생활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외한다.

가. 공개됨으로써 당해 법인등 또는 당해 개인의 권리, 경쟁상의 지위 또는 그 밖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

나. 행정기관의 요청을 받고 공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임의로 제공된 것으로서, 법인 등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관례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것과 않도록 되어있는 것과 기타 당해 조건을 붙이는 것이 당해 정보의 성질,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정보

첫째, 본호에서 말하는 ‘경쟁상의 지위, 권리,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의 유무는 당해 법인등과³⁵⁾ 행정과의 관계, 그 활동에 대한 헌법상의 특별한 고려의 필요성 등, 법인등 및 정보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권리’에는 재산권 뿐 만 아니라 종교법인의 종교의 자유, 학교법인의 학문이 자유 등 비재산권적 권리도 포함한다.

둘째, 법인정보의 구체적 사례를 살펴본다.

① 저작권, 노하우³⁶⁾ : 가령 건축확인신청서에 첨부된 평면도와 관련하여, 공개는 설계자의 노하우를 침해하고,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공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공개정보가 되는 법인정보에 해당한다.

34) 大阪府水道部文書事件,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 1994. 2. 8. 민집48권2호255頁

35) 여기서 말하는 법인등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도 포함하는 의미에서 사용된다.

36) 노하우는 우리 법제에 따르면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

② 계약의 내용 : 일반적으로 공공사업에 입찰에 참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낙찰가격을 공표하는 것이 낙찰받은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 실제 답합을 방지하고 적정한 가격에 입찰하도록 하기 위하여 낙찰가격을 공표할 필요가 있다.

③ 지불상대방의 법인명 및 청구서 : 해당 문서가 공개됨으로 인하여 침해받게 될 법인의 불이익에 대하여 법인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최고재판소는 奈良顯食糧費文書事件에서 “음식점의 거래은행명, 계좌번호가 그의 경쟁상의 지위를 저해하거나 경영상의 노하우에 해당하지도 않고, 이들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그 지위나 노하우가 저해 내지는 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³⁷⁾

④ 법인의 자산·경리·재무상황 : 이에 관하여는 경우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상법이나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주주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재무상황에 관하여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가 있다. 이러한 정보는 법체계의 통일상 정보공개법에서도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가령, 골프장개발사업자가 개발허가신청시에 제출한 자금계획서와 관련하여 용지매수예정가격 등은 그것이 공개되면 법인의 경쟁상의 지위를 해치는 것이 된다.

3. 공개됨으로서 국가안전을 해칠 우려, 외국 또는 국제기관 등의 신뢰관계에 손상을 줄 우려 또는 외국 또는 국제기관등과의 교섭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첫째, 국가안전은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토, 국민 및 통치체체가 평화로운 상태에 있다는 것, 즉 국가사회의 기본적인 질서가 평온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말한다. 국가방위에 관한 정보에 한하지 않고 치안유지에 관한 정보도 포함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아래의 제4호에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별도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본호에서는 국가방위로 한정하여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37)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 2002. 9. 12. 판례시보 1804호21頁

둘째, 국가안전 및 외교관계를 해칠 우려가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이 정보를 비밀(국가기밀)로 지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위 첫째, 둘째의 요건이 형식적 요건이라면 이에 대비되는 실질적 요건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당한 이유’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비)공개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국가안전이나 외교관계에 관련된 정보와 관련하여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개시거부를 판단함에 합리적 이유(reasonable grounds)가 있는지만 판단하면 된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 판단의 대상이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최고재판소 판례를 살펴본다. 那覇市 自衛隊施設建築確認書類 公開決定 사건이다. 나패시 방위시설국장이 해상자위대잠수함작전 센터를 나패시내의 자위대기지내에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기준법에 따라 건축계획통지서를 시에 건축주사에게 제출하였는데, 조례에 의하여 이 통지서 및 첨부자료에 대하여 개시청구가 있었다. 시는 당초 비공개를 결정하였지만, 불복신청을 받고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면서 공개결정을 하였다. 이에 국가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결정의 집행정지도 아울러 신청한 사건이다. 최고재판소는 “문서의 공개에 의하여 국유재산인 본건 건물의 내부구조가 밝혀지는 것과 경비상의 지장이 생기는 외에,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대응하는 기능이 감쇄됨으로써 본건 건물의 안정성이 저감되는 등 본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가지는 고유의 이익을 침해받게 된다는 것을 이유로 함으로써 소송이 법률상의 쟁송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조례의 행정집행정보의 예외사유가 원고인 국가의 이익을 개별적 이익으로 보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 이상, 국가에는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어 소를 각하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각하판단은 위 계획통지서와 첨부

도서가 본호에서 말하는 적용제외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하급심 판결을 사실상 지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³⁸⁾

4. 공개됨으로써 범죄의 예방, 진압 또는 수사, 공소유지, 형의 집행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행정기관의 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본 호와 관련하여서는 따로이 설명할 점이 없으나, 일본 내에서도 일반적, 개괄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남용의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다. 실질적 요건, 형식적 요건 등은 전호와 동일하다.

5. 국가기관, 독립행정법인등, 지방공공단체 및 지방독립행정법인의 내부 또는 상호간의 심의, 검토 또는 협의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됨으로써 솔직한 의견교환 또는 의사결정의 중립성이 부당하게 손상될 우려, 부당하게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 또는 특정한 사람에게 부당하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본 호의 정보를 일반적으로 ‘의사형성과정정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의사형성과정 중에 정보가 개시되면 행정기관의 적정한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결과가 되고, 정부의 의사결정 전의 정보를 모두 불개시하게 되면 반대로 정부의 활동을 설명할 책무를 저버리게 되는 결과가 타당하지 않으므로 본호와 같은 절충점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다만 ‘부당하게 국민에게 혼란을 줄 우려’라는 요건은 국민주권의 이념상, 민주정치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市民象을 고려할 때 매우 한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공개결정의 구체적 기준은 하나로 명확하게 제시할 수는 없다. 결국은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을 비교 형량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38)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 2001. 7. 13. 판례지방자치 223호22頁

둘째,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다. 행정기관이 의사형성 과정에 있다면 그것은 의견에 관한 것이고,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의 공개가 본호에서 말하는 어떠한 우려도 찾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 반면 의사형성과정정보는, 순수한 사실인 경우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실과 의견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므로 결국은 비교형량에 의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본 호와 관련한 판례의 경향은 일정하지 않다. 댐건설 후보지역의 도면 공개청구사건에서는 위 도면은 행정의사형성과정의 정보에 해당하고, 위 정보를 공개할 경우 행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하여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판시한 반면,³⁹⁾ 타 지역 댐 근처 조사연구 자료 공개청구사건에서는 “이미 조사가 종료하였으며, 공개로 인하여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縣立학교교원채용시험의 시험문제와 해답 공개청구사건에서는 “시험문제와 정답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수험자의 준비상황에 영향을 주어 교원으로서 자격이 있는 수험자를 채용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공개에 따라 문제작성자의 부담이 증대되어 문제작성자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인정할 수 없으며, 현 내부 수험자와 현 외부 수험자 사이에 조례에 근거한 문서공개청구권의 유무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원채용시험의 공정성 또는 원활한 집행이 현저하게 지장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시험문제와 그 해답은 공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⁴⁰⁾

6. 국가기관, 독립행정법인등, 지방공공단체 및 지방독립행정법인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됨으로써 아래에 기재된 우려, 기타 당해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상, 당해사무 또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39)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 1994. 3. 25. 판례시보 1512호22頁

40)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 2002. 10. 2. 판례시보 1805호 38頁

- 가. 감사, 검사, 취체, 시험 또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에 관계되는 사무와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의 파악을 곤란하게 할 우려 또는 위법 혹은 부당한 행위를 용이하게 하거나 또는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할 우려
- 나. 계약 교섭 또는 쟁송에 관계된 사무로서 독립행정법인등, 지방공공단체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의 재산상 이익 또는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부당하게 해칠 우려
- 다. 조사연구에 관계된 사무로서 공정하고 능률적인 수행을 부당하게 저해할 우려
- 라. 인사관리에 관계된 사무로서, 공정하고 원활한 인사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 마. 독립행정법인등, 지방공공단체가 경영하는 기업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에 관계된 사업으로서, 그 기업경영상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

본 호 각목의 정보를 포괄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집행정보’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집행정보도 그 개념상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한정하여야 한다.

본 호 각목의 요건은 대동소이하다. 대표적으로 가목(감사, 검사, 취체, 시험 또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에 관계되는 사무와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의 파악을 곤란하게 할 우려 또는 위법 혹은 부당한 행위를 용이하게 하거나 또는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할 우려)의 예를 살펴보면 감사, 검사 등의 사무일정에 관련하여 검토중인 문서에 대하여 개시청구가 있고, 조직공용문서로서 공개상이 되는데, 이를 공개한다면 검사, 감사 등을 면하기 위하여 통상의 작업을 변경하고, 증거인멸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적정한 사실파악을 곤란하게 하여, 결국은 검사, 감사 등의 일시를 회피하게 되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위 문서청구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개시거부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다음으로 나목(계약 교섭 또는 쟁송에 관계된 사무로서 독립행정법인등, 지방공공단체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의 재산상 이익 또는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부당하게 해칠 우려)의 예를 살펴본다. 시가 지불한

변호사보수액 및 그 산정방법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것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⁴¹⁾ 그러나 변호사보수에는 표준보수가 정하여져 있고,⁴²⁾ 변호사라고 하는 직업의 공공성으로부터도 변호사보수액을 공표하는 것이 변호사에의 의뢰를 곤란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비판이 있다. 일본 하급심은 후자의 비판적 견해에 있다고 볼 수 있다.⁴³⁾

라목(인사관리에 관계된 사무로서, 공정하고 원활한 인사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판례가 있다. 나고야시에서 교무주임후보자추천서의 교장소견서이 비공개되었는데, 소견란을 공개한다면 솔직한 기재가 불가능하게 되어 인사행정의 목적이 손상된 다며 본 라목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 그것이다.⁴⁴⁾

4. 부분개시

제 6 조(부분개시) ① 행정기관의 장은 개시청구에 관계된 행정문서의 일부에 불개시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 불개시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용이하게 구분하여 제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시청구자에게 당해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의미있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시청구에 관계된 행정문서에 전조 제1호의 정보(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 당해정보 중, 성명, 생년월일, 그 밖에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기술(記述)등의 부분을 제외함으로써, 공개되더라도 개인의 권리의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동호의 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41)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 1999. 5. 26. 판례집미등재, 松井茂記, 前掲書, 283頁에서 재인용.

42)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보수에 있어서 소가에 따라서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산정하여 이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43) 大阪高判, 1999. 5. 26. 판례집미등재, 松井茂記, 前掲書, 283頁에서 재인용.

44)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 1995. 2. 10. 판례집미등재, 松井茂記, 前掲書, 283頁에서 재인용.

본조 제1항은 행정문서 가운데 공개할 수 있는 부분과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섞여 있을 때에는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고 한다. 공개할 수 있는 부분과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의 구분자체가 용이하더라도 양자의 분리가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는 양자의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령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은 음영처리하여 공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⁴⁵⁾ 또한 다량의 문서를 개시청구하였고, 그로부터 비공개정보를 구분하여 제외하는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분개시를 거부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한다.⁴⁶⁾

다음으로 비공개부분을 제외하면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부분개시의 의무를 면제한 것이 된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개시가 금지되는 것과 비교된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자발적으로 개시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판례가 본조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판례의 경향을 살펴보면, 원고(大阪府 주민)들이 知事の 교제비에 관한 문서공개청구를 한 사건에서 지사는 현금출납부, 지출증명서, 채권자의 영수증 및 청구서에 관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자, 원고들이 지사의 정보비공개결정의 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최고재판소는 소위 “독립된 하나의 정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최고재판소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와 나머지 부분을 나누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는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행정기관에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주민들 역시 행정기관에 위 법조항에⁴⁷⁾ 근거하여 부분공개를 요구할 수

45) 우리나라에서는 수사자료, 판결문 등에서 피해자, 피의자 등의 성명, 나이, 주소 등을 음영처리하여 등사교부하는 예를 찾아볼 수 있다.

46) 宇賀克也, 新情報公開法 逐條解説, 有斐閣, 2002, 75頁

47) 사안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大阪府 조례가 문제되었다.

있는 권리는 없다”고 판단하였다.⁴⁸⁾ 최고재판소의 위와 같은 判旨는 여러 사건에서 그대로 답습되었다.

그러나 일본 최고재판소의 위와 같은 判旨가 타당한지에 대하여는 의문이다. 일단 최고재판소의 이러한 해석은 명문 규정에 반하고, 교제비의 경우 지출의 상대방은 개인정보라고 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지만, 지출원인, 지출장소, 지출액은 비공개로 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무엇보다 위와 같은 판례를 근거로 하여 행정기관 등이 교제비, 식대 등의 자료에 비공개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의도적으로 포함시킨 경우에 이들 교제비나 식대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5. 재량적 개시

제 7 조(공익상의 이유에 의한 재량적 개시) 행정기관의 장은 개시청구에 관계된 행정문서에 불개시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시청구자에 대하여 당해 행정문서를 개시할 수 있다.

이는 국민주권 내지는 국민의 알권리에 크게 복무한다는 점에서 칭찬받을 만한 조항이나, 실제 본조에 의한 재량적 개시가 이루어진 바 없다는 점에서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의 정치, 사회 상황 변화에 따라 앞으로의 운용방향이 기대되는 조항이라 하겠다.

6. 행정문서의 존부에 관한 정보

제 8 조(행정문서의 존부에 관한 정보) 개시청구에 대하여 당해개시청구에 관계된 행정문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답하는 것만으로도 불개시정보를 개시하

48)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 2001. 3. 27. 민집55권2호30頁; 상세한 비판은 近藤卓史, “獨立した一體的情報の概念と部分公開の法理”, 法律時報75卷7号, 2003, 80頁

는 것이 될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행정문서의 존부를 밝히지 않고 당해 개시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의 취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개시청구를 거부할 때에는 개시청구에 관계된 행정문서의 존부를 명확히 밝히고 거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시청구에 관계된 문서의 존부를 명확히 하는 것만으로도 불개시정보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다. 가령, 특정 개인의 병력에 관한 정보, 정보교환의 존재를 밝히지 않기로 약속하고 타국등과 교환한 기밀정보, 범죄내사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는 그 정보의 개시청구에 대하여 해당행정문서의 정보는 존재하지만 불개시결정을 하거나, 혹은 당해 행정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하게 되면 불개시정보의 보호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첨단기술에 관한 특정기업의 설비투자계획에 관한 정보,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특정물자에 관한 정책결정의 검토상황에 관한 정보도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남용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입법정책적으로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⁴⁹⁾ 가령 특정 피의자를 명시하여 그 피의자에 대한 내사자료에 관한 개시청구가 있고, 문서의 존재를 회답하는 것 자체가 내사의 유무를 밝히게 되는 경우 및 같은 이유로 특정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공공의 안전 등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7. 개시청구에 대한 조치

제 9 조(개시청구에 대한 조치)

- ① 행정기관의 장은 개시청구에 관계된 행정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시할 때에는 이를 결정하여 개시청구자에게 그 취지 및 개시실시에 관하여 정령에 정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9) 奥平康弘, “中間報告を讀んで”, *ジュリスト* 1093号, 1996, 24頁

② 행정기관의 장은 개시청구에 관계된 행정문서의 전부를 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전조의 규정에 따라 개시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및 개시청구에 관계된 행정문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불개시결정을 하고, 개시청구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에서 유의하여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공개법에 기한 개시청구는 行政手續法에서 말하는 신청에 해당하고, 결정에 관하여는 행정수속법 제8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유를 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개시거부결정에 대한 理由付記’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최고재판소는 중요한 판결을 한 바 있다. 東京都警視廳情報公開請求事件이 그것이다.⁵⁰⁾ 이 사건에서는 동경도가 개인 정보 실태조사를 할 때에 제출받은 경시청이 보유하는 개인정보파일 건수 등을 기재한 문서에 대한 공개청구에 대하여 예외사유를 규정한 ‘동경도공문서의 개시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8호에 해당한다’고 하는 이유를 부기하여 개시거부결정을 하였다. 이러한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거부처분의 위법성의 쟁점이 되었는데, 최고재판소는 원심의 결정을 지지하였는데 그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공문서의 비개시결정 통지서에 부기되어야 하는 이유는 개시청구자에 대하여는 그가 본조례 제9조 각호 소정의 비개시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알려주어야 하는데, 단지 비개시결정의 근거규정만을 부기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해석한다면 당해 공문서의 종류, 성질 등에 비추어 개시청구자가 이를 당연히 알 수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본조례 제7조 제4항이 요구하고 있는 이유부기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둘째, 제2항에서 말하는 ‘행정문서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 즉, ‘문서의 부존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문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다. 애초에 개시청구 대상이 된 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와

50)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 1992. 12. 10. 判例時報 1453号, 116頁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보존기한의 경과로 폐기된 경우를 포함한다. 둘째는 개시청구 대상이 된 문서 자체는 존재하나 그것이 정보공개법상의 ‘공문서’나 ‘행정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8. 개시결정기한

제10조(개시결정등의 기한)

- ① 전조 각항의 결정(이하 ‘개시결정등’이라 한다)은 개시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2항에 규정에 따라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당해 보정에 필요한 일수는 당해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의 곤란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동항에 규정된 기간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개시청구자에게 지체 없이 연장 후의 기간 및 연장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과 관련하여 이른바 ‘남용적 청구 거부’가 인정되는가가 문제된다. 가령 특정 행정기관이나 그 행정기관 내부의 특정 部處가 보유하는 모든 문서를 청구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권리남용에 관한 일반 법리를 적용하여 그 개시청구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남용적 청구 거부를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그것이 행정기관의 거부권 행사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고, 위와 같은 청구는 대부분 공개대상 문서의 ‘특정성’을 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청구는 문서의 특정성 결여 혹은 행정을 현저히 감쇄시키는 청구 등 정보공개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청구를 기각하거나 개시기한을 연장하는 등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제11조(개시결정등의 기한의 특례)

개시청구에 관계된 행정문서가 현저하게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개시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전부에 대하여 개시결정등을 함으로써 사무

제3장 일본 정보공개법의 내용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개시청구에 관계된 행정문서 중 상당한 부분에 관해 해당기간 내에 개시결정 등을 하고, 나머지 행정문서에 관하여는 상당한 기간 내에 개시결정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동조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개시청구자에게 아래에 규정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본조를 적용하는 취지 및 그 이유
2. 나머지 행정문서에 관하여 개시결정 등을 하는 기한

본조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점만을 살펴보면 된다.

첫째, 사무수행의 현저한 지장은 정보개시를 준비하기 위하여 해당 부처의 통상사무가 현저히 지장을 받는가가 기준이 된다.

둘째, 나머지 부분도 공개하여야 하는 ‘상당한 기간’의 기준은 행정기관이 그 통상사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기간연장을 규정한 제10조 제2항의 규정과의 형평상 본조의 상당한 기간도 30일 내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이 문제는 제10조의 경우도 포함하여 생각하여야 하는데, 법정기간 내에 행정기관이 결정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가 문제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개결정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고, 미국 정보공개법은 행정기관이 거부한 것으로 보아 행정상 구제 및 사법적 구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본 정보공개법은 이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다. 학설상으로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행정기관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행정기관이 답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이 확인될 뿐이지, 공개하여야 할 의무는 없고, 오히려 행정기관이 이제야 개시거부결정을 하면 다시 개시거부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이는 불필요한 우회적인 수단을

강요하는 것이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개시청구에 대하여 기한 내에 개시결정등이 없는 경우에는 곧바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⁵¹⁾

9. 사안의 이송

제12조(사안의 이송)

- ① 행정기관의 장은 개시청구 대상이 된 행정문서가 다른 행정기관에서 작성된 것인 때, 기타 타 행정기관의 장이 개시결정등을 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타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안을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송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개시청구자에게 사안을 이송하였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전항에 규정에 의하여 사안이 이송된 때에는 이송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개시청구에 관하여 개시결정 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송한 행정기관이 장이 이송 전에 한 행위는 이송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 ③ 전항의 경우, 이송받은 행정기관이 장이 제9조 제1항의 결정(이하 ‘개시결정’이라 한다)을 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개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송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개시의 결정에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본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안의 이송은 개시청구대상 행정문서가 타 행정기관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 혹은 당해 행정문서에 타 행정기관의 사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 당해 타 행정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신속하고도 적절한 처리일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다만 법문상 사안의 이송이 인정되는 경우는 개시청구 대상이 된 행정문서가 다른 행정기관에서 작성된 것인 때, 기타 타 행정기관의 장이 개시결정등을 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가

51) 松井茂記, 前掲書, 148頁

있는 때에 한정되고, 절차적 요건으로는 당해 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타 본조에서 특별히 언급할 내용은 없고, 아래의 독립행정법인등으로의 사안의 이송도 본조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12조의2(독립행정법인등으로의 사안의 이송)

① 행정기관의 장은 개시청구에 관계된 행정문서가 독립행정법인등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 때, 기타 독립행정법인등이 독립행정법인등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개시결정 등을 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독립행정법인등과 협의하여 당해 독립행정법인등에 사안을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송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개시청구자에게 사안을 이송하였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규정에 의하여 사안이 이송된 때에는, 당해 사안에 관하여는, 행정문서를 이송 받은 독립행정법인등이 보유하는 독립행정법인등정보공개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법인문서로, 개시청구를 이송받은 독립행정법인등에 대한 독립행정법인등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개시청구로 간주하여, 독립행정법인등정보공개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독립행정법인등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중 ‘제4조제2항’은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으로, 독립행정법인등정보공개법 제17조 제1항 중 ‘개시청구를 한 자 또는 법인문서’는 ‘법인문서’로, ‘의하여, 각각’은 ‘의하여’로, ‘개시청구에 관계된 수수료 또는 개시’는 ‘개시’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안이 이송된 경우, 이송받은 독립행정법인등이 개시하는 때에는, 이송한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개시에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10. 제3자의 의견제출

제13조(제3자에 대한 의견제출기회 부여 등)

① 개시청구에 관계된 행정문서에 국가, 독립행정법인등, 지방공공단체, 지방 독립행정법인 및 개시청구자 이외의 자(이하 본조, 제19조 및 제20조에서 ‘제3자’라 한다)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시

결정을 할 때에 당해 정보에 관계된 제3자에 대하여 개시청구에 관계된 행정문서의 표시 기타 정령에 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시결정에 앞서, 당해 제3자에 대하여 개시청구에 관계된 행정문서의 표시 기타 정령에 정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제3자의 주소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자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행정문서를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정보가 제5조 제1호 나목 또는 동조 제2호 단서에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2. 제3자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행정문서를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개시하고자 할 때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 받은 제3자가 당해 행정문서의 개시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 개시결정을 할 때에는 개시결정일과 개시실시일 사이에 적어도 2주일간을 간격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에, 행정기관의 장은 개시결정 후 즉시 당해 의견서(제18조 및 제19조에서 ‘반대의견서’라 한다)를 제출한 제3자에 대하여 개시결정을 하였다는 사실과 그 이유 및 개시를 실시할 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서 언

본 조는 개시청구 대상이 된 행정문서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개시청구자 외의 제3자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개시결정등을 하기에 앞서 제3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유익하고도 필요한 경우가 있어 만들어진 제도이다.

(2) 임의적 의견청취(제1항)

제3자는 국가, 독립행정법인등, 지방공공단체 및 개시청구자 이외의 자를 말하는 것으로 공개대상 정보를 작성, 보관하고 있지 않은 국가,

독립행정법인등, 지방공공단체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의견 제출의 기회가 부여되는 경우는 제3자가 스스로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지 않는다. 개시청구자, 제3자 이외의 다른 자로부터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3자에 관한 정보가 기록된 문서 등을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행정기관은 그 제3자에게 ①개시청구 연월일, ②개시청구 대상이 된 행정문서에 기록된 해당 제3자에 관한 정보의 내용, ③의견서를 제출할 곳 및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개시청구자의 성명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석에 의할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개시청구자의 성명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3자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필요적 의견청취(제2항)

본 항 제1, 2호의 경우는 제3자에 대한 절차적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경우이고, 헌법상의 원칙인 due process 혹은 사전고지와 청문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행정기관은 그 제3자에게 ①개시청구 연월일, ②개시청구 대상이 된 행정문서에 기록된 해당 제3자에 관한 정보의 내용, ③의견서를 제출할 곳 및 제출기한 뿐 만 아니라 ④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지 및 그 규정을 적용하는 이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본 항에 의한 통지 및 의견청취절차는 그 제3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에는 생략된다. 행정절차의 상대방이 소재불명인 경우 일반적으로는 공시송달에 의하나, 정보공개법은 공시송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본항의 절차를 단순히 생략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11. 개시의 실시

제14조(개시의 실시)

- ① 행정문서의 개시는 문서 또는 도면에 관하여는 열람 또는 복사교부에 의하고, 전자적 기록에 관하여는 그 종별, 정보화의 촉진상황 등을 감안하여 정령에 정한 방식에 따라 행한다. 다만 열람방법에 의한 행정문서에 개시에 있어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행정문서의 보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그 밖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복사로 이를 행할 수 있다.
- ② 개시결정에 기한 행정문서의 개시를 받은 자는 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당해 개시결정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가 구하는 개시의 실시방법 기타 정령에서 정한 사항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제9조 제1항에 규정한 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기간 내에 당해 신청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개시결정에 기한 행정문서의 개시를 받은 자는 최초에 개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거듭 개시를 받는다는 취지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항 단서를 준용한다.

정보공개방법은 열람을 원칙으로 하고, 희망에 따라 사본을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문서의 성질이나 매체의 종류에 따라서는 기술적인 제약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가령 원본보호의 필요성 때문에 원본 자체의 열람을 제공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본을 열람 또는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행령 제9조에는 개시실시의 방법을 상세하고 설명하고 있다.

개시실시방법을 열람으로 할 것인지 사본교부로 할 것인지는 개시청구자가 결정할 문제이지만, 법 제14조 제2항은 개시청구자가 구하는 개시실시방법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열람이나 사본교부

등은 문서, 도화 등 기존 매체에 해당하는 것이고, 電磁的記錄의 개시 실시방법은 政令에서 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본조의 신고는 서면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렇게 설명하는 견해들도 다수 있다. 그러나 이미 제4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개시의 일시와 장소와 관련하여서는, 우선 사본의 송부의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행정기관의 창구에서 열람하거나 사본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조정이 필요하다.

12. 타 법령에 의한 개시실시와의 조정

제15조(타 법령에 의한 개시실시와의 조정)

- ① 행정기관의 장은 타 법령규정에 의하여 누구에게라도 개시청구에 관계된 행정문서가 전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개시되는 경우(개시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 내에 한한다)에는, 동항 본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행정문서에 관하여는 당해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개시하지 않는다. 다만 당해 타 법령 규정에 일정한 경우에는 개시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다른 법령이 구정에 정한 개시방법이 종람(마음대로 읽고 구경함)인 때에는 당해 종람을 전조 제1항 본문의 열람으로 간주하고, 전항 규정을 적용한다.

13. 수수료

제16조(수수료)

- ① 개시청구를 한 자 또는 행정문서의 개시를 받는 자는 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각각 실비 범위 내에서 정령에 규정된 액수의 개시청구에 관계된 수수료 또는 개시의 실시와 관계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수수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가능한 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경제적 곤란 기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제1항의 수수료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수수료는 개시청구 수수료와 개시실시 수수료로 나뉜다. 개시청구 수수료는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개시청구 대상이 된 행정 문서 1건당 300円,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한 개시청구의 경우에는 1건당 200円으로 규정되어 있다.⁵²⁾ 개시실시수수료는 시행령 별표에 따라 행정문서의 종류별, 개시실시의 방법, 사본교부의 경우에는 매수에 따라 그 액수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

14. 권한의 위임

제17조 (권한 또는 사무의 위임)

행정기관의 장은 정령(내각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 및 회계검사원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의 명령)에 정한 바에 따라, 이 장에 규정된 권한 또는 사무를 당해 행정기관의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시청구에 대하여 이를 처리해야할 행정기관의 단위는 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각 행정기관이다. 그러나 사무의 능률적 분배를 위하여 각 행정기관에 내부부처, 시설 등 기관, 특별한 기관, 地方支分部處 등에 개시청구의 처리를 위임하는 것이 적당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본조를 둔 것이다.

시행령 제4조 제4항은 위와 같이 행정기관의 장이 권한 또는 사무의 위임을 한 때에는 위임받는 직원의 관직, 위임하는 권한 또는 사무 및 위임의 효력발생일을 관보에 공시하여야만 한다.

52) 이는 현재 시행중인 ‘行政機關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施行令(2014. 12. 19. 政令 제401호)에 따른 것이다.

제 4 절 개시결정등에 대한 이의

1. 심사회에의 자문

제18조(심사회에의 자문)

개시결정등에 관하여 행정불복심사법에 의한 불복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불복신청에 대한 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불복신청에 대한 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회계 감사원의 장인 경우에는 따로 법률에 규정된 심사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불복신청이 부적법하여 각하할 때
2. 재결 또는 결정에 있어서 불복신청에 관계된 개시결정등(개시청구에 관계된 행정문서의 전부를 개시한다는 결정을 제외한다. 이하 본호 및 제20조에서는 같다)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 당해 불복신청에 관계된 행정문서의 전부를 개시한다고 결정할 때, 다만, 당해 개시결정등에 관하여 반대 의견서가 제출된 때를 제외한다.

구법하에서는 심사회의 권한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특히 심사회의 권한 여부에 많은 논의가 있었다. 가령 조사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조사 내지는 자문은 개시거부처분의 적법성 여부 뿐만 아니라 타당성 여부에까지 미치는가 등이다. 그러나 현행법하에서는 심사회에 관한 규정은 모두 삭제되었고, 다만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심사회에 자문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심사회에 관한 논의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다만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심의회가 공개여부 결정에 앞서 이를 심의하기 위한 기관임에 반하여, 일본의 심사회는 개시결정등에 대하여 불복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불복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이 재결 또는 결정을 하기 위하여 자문하는 기관에 불과하다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2. 불복신청자에 대한 통지

제19조(자문하였다는 뜻의 통지)

전조에 규정에 따라 자문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아래에 기재된 자에 대하여 자문을 하였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불복신청인 및 참가인
2. 개시청구자(개시청구자가 불복신청인 또는 참가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3. 당해 불복신청에 관계된 개시결정등에 관하여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제3자(당해 제3자가 불복신청인 또는 참가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 개시청구자는 어떤 소송에 의하여 다룰 수 있는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개시거부결정을 행정처분으로 보는 데에는 異論이 없으므로 개시거부결정 취소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일본 정보공개법은 취소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불복신청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즉 불복신청전치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자유선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3. 제3자의 불복신청 기각

제20조(제3자의 불복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등의 절차)

제13조 제3항의 규정은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결 또는 결정을 한 경우에 준용한다.

1. 개시결정에 대한 제3자의 불복신청을 각하하거나 또는 기각하는 재결 또는 결정
2. 불복신청 대상이 된 개시결정을 변경하여 당해 개시결정등의 대상이 된 행정문서를 개시한다는 재결 또는 결정(제3자인 참가인이 당해 행정문서의 개시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한다)

4. 소송 이송의 특례

제21조(소송의 이송에 관한 특례)

- ① 행정사건소송법 제12조 제4항에 의해, 동항에 규정된 특정관할재판소에 개시결정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또는 개시결정 등의 대상이 된 불복신청에 대한 재결 또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본조 제2항 및 부칙 제2항에서 ‘정보공개소송’이라 한다)이 제기된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5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재판소에 동일, 동종, 또는 유사한 행정문서의 대상이 된 개시결정 등 또는 이를 대상으로 하는 불복신청 등에 대한 재결 또는 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항고소송(동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항고소송을 말한다. 제2항에서도 같다.)이 계속 중인 때에는, 당해 특정관할재판소는 당사자의 주소 또는 소재지, 심문을 받을 증인의 주소, 쟁점 또는 증거의 공통성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당해 타 재판소 또는 동법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재판소에 이송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규정은 행정사건소송법 제12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동항에 규정한 특정관할재판소에 개시결정 등 또는 이들에 대한 불복신청에 대한 재결 또는 결정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정보공개소송 이외의 것이 제기된 경우에 준용한다.

5. 기 타

- 제22조(개시청구를 하려고 하는 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개시청구를 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 용이하고도 적확하게 개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문서등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당해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행정문서의 특징에 이바지하는 정보의 제공 기타 개시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의 편리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총리대신은 이 법률이 원활한 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시청구에 관한 총합적 안내소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상황의 공표) ① 총리대신은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이 법률의 시행상황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총리대신은 매년도 전항의 보고를 취합하여 그 개요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4조(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제공에 관한 시책 충실)

정부는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의 총합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가 적시에, 또한 적절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명백하게 공개되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제공에 관한 시책을 충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지방공공단체의 정보공개) 지방공공단체는 이 법률에 취지에 따라 그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 필요한 시책을 책정하고 또한 이것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정령에의 위임)

이 법률이 정하는 것 이외에, 이 법률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 4 장 일본정보공개현황

일본에서는 정보공개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무성에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종합안내소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많은 都道府県에도 종합안내소가 설치되어 있다.

정보공개 대상기관은 기관별로 각각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하는 담당관을 두고 있다.

2013년 및 그로부터 10년 동안의 정보공개현황을 행정기관의 경우와 독립행정법인등의 경우를 나누어 청구건수, 인용 또는 기각건수, 기각 사유별 등으로 항목을 세분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제 1 절 행정기관의 경우

1. 2013년 행정기관정보공개법의 시행 상황⁵³⁾

표 1. 공개 청구 건수⁵⁴⁾

(단위 : 건, %)

	개시청구건수	본성청 ⁵⁵⁾	
		본성청 ⁵⁵⁾	기타
2013년도 (비율)	103,457 (100)	18,794 (18.2)	84,663 (81.8)
2012년도 (비율)	100,286 (100)	15,568 (16.5)	83,718 (83.5)

53)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 정보공개제도 중 「2013년도 행정기관 정보공개법의 시행 상황」 참조(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346956.pdf, 최종방문일: 2015.10.30)

54) 「2013년도 행정기관 정보공개법의 시행 상황」, 1면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346956.pdf, 최종방문일: 2015.10.30).

55) ‘본성청’은 총무성에 접수된 것을 말하고, ‘기타’는 지방지분부국(地方支分部局), 시설등기관등에 접수된 것을 말한다.

표 2. 개시 청구 사안의 처리 상황⁵⁶⁾

(단위 : 건, %)

	처리해야할 사안				사안의 처리상황			
	신규접수 사안	전년도로부터의 이월사안	타기관으로부터 이송된 사안	계	개시 결정이 된 사안	취하된 사안	타기관에 전부 이송한 사안	처리중 사안 (다음 년도에 이월)
2013 년도 (비율)	103,457	5,484	352	109,293 (100)	100,752 (92.2)	2,722 (2.5)	320 (0.3)	5,499 (5.0)
2012 년도	100,286	7,519	181	107,986 (100)	99,141 (91.8)	3,211 (3.0)	168 (0.1)	5,466 (5.1)

표 3. 개시결정등의 건수

(단위 : 건, %)

	개시결정등						
	계	개시결정			(개시결정 된 것 중) 공익재량 개시	(개시결정 된 것 중) 개시실시의 신청 없이 이루어진 경우	불개시 결정
		소계	전부 개시	일부 개시			
2013 년도 (비율)	94,464 (100)	93,199 (97.6)	39,398 (41.3)	53,801 (56.3)	0	2,889 (3.0)	2,265 (2.4)
2012 년도	94,143 (100)	92,092 (97.8)	47,627 (50.6)	44,465 (47.2)	0	3,021 (3.2)	2,041 (2.2)

56) 「2013년도 행정기관 정보공개법의 시행 상황」, 2면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346956.pdf, 최종방문일: 2015.10.30).

표 4. 불개시 이유 내역⁵⁷⁾

(단위 : 건, %)

	불개시결정과 일부개시결정 건수	이유의 내역			
		불개시정보	행정문서부 존재	존부응답 거부	기타
2013년도 (비율)	56,066 (100)	53,798 (96.0)	2,380 (4.2)	313 (0.6)	211 (0.4)
2012년도	46,506 (100)	44,582 (95.9)	2,287 (4.9)	152 (0.3)	124 (0.3)

표 5. 불개시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것 및
존부응답거부에 의한 것의 내역⁵⁸⁾⁵⁹⁾

(단위 : 건, %)

불개시정보의 구분		불개시정보에 해당(비율)	존부응답거부 (비율)
		53,798(100)	313(100)
내역	제1호 개인에 관한 정보	43,569(81.0)	135(43.1)
	제2호 법인 등에 관한 정보	44,417(82.6)	162(51.8)
	제3호 국가안전 등에 관한 정보	1,086(2.0)	21(6.7)
	제4호 공공의 안전 등에 관한 정보	6,130(11.4)	11(3.5)
	제5호 심의, 검토 등에 관한 정보	806(1.5)	3(1.0)
	제6호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한 정보	7,526(14.0)	56(17.9)

57) 「2013년도 행정기관 정보공개법의 시행 상황」, 6면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346956.pdf, 최종방문일: 2015.10.30).

58) 1건의 결정에 복수의 불개시이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59) 「2013년도 행정기관 정보공개법의 시행 상황」, 7-8면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346956.pdf, 최종방문일: 2015.10.30).

표 6. 불복신청 건수⁶⁰⁾

(단위 : 건)

	불복신청건수		
		심사청구	이의신청
2013년도	1,037	346	691
2012년도	862	234	628

표 7. 불복신청 이유⁶¹⁾

(단위 : 건)

	개시청구자로부터의 불복신청	제3자로부터의 불복신청	계
불개시결정 (일부개시 결정의 불개시 부분을 포함)에 대한 불복신청	불개시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불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474		708
	행정문서의 부존재를 이유로 하는 불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142		
	존부응답거부에 의한 불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39		
	형식상 불비 또는 권리남용을 이유로 하는 불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53		
개시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행정문서의 특정에 대한 불복(개시 결정된 행정문서 이외에도 개시청구 대상문서가 있고, 개시청구한 문서와 개시결정된 문서가 다른 경우 등) 257	자기와 관련된 정보가 기록된 행정문서를 개시한다는 결정에 대한 불복 28	285
기타 불복신청	부작위에 대한 불복 100		173
	사안의 이송, 기한의 연장에 관한 불복 1		
	결정내용에 관계없는 사항에 대한 불복 72		
계	1,138		1,166

60) 「2013년도 행정기관 정보공개법의 시행 상황」, 10면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346956.pdf, 최종방문일: 2015.10.30).

61) 「2013년도 행정기관 정보공개법의 시행 상황」, 10면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346956.pdf, 최종방문일: 2015.10.30).

표 8. 불복신청 건수와 처리 상황⁶²⁾

(단위 : 건, %)

	처리해야 할 건수			처리 완료	취하	처리중 (다음 면도에 이월)	처리방침, 심사회 에의 자문준비 중 등	심사회 에서 자문중	심사회의 답변을 받고 재결 결정 준비 중
	신규 신청 건수	전년도 에서 이월된 건수							
2013년도 (비율)	2,149 (100)	1,037	1,112	605 (282.)	51 (2.4)	1,493 (69.4)	710 (33.0)	615 (28.6)	168 (7.8)
2012년도	2,183 (100)	862	1,321	923 (42.3)	147 (6.7)	1,113 (51.0)	505 (23.1)	511 (23.4)	97 (4.5)

표 9. 불복신청에 대한 재결·결정 등의 상황⁶³⁾

(단위 : 건, %)

	신청 기각	신청 인용	신청일 부인용	각하	기타 ⁶⁴⁾	계
심사회에 자문하지 않고 재결·결정 등을 한 것	--	9	--	96	1	106
심사회에 자문하여, 답변을 받고 재결·결정 등을 한 것	342	28	129	--	--	499
계 (비율)	342 (56.5)	37 (6.1)	129 (21.3)	96 (15.9)	1 (0.2)	605 (100)

62) 「2013년도 행정기관 정보공개법의 시행 상황」, 11면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346956.pdf, 최종방문일: 2015.10.30).

63) 「2013년도 행정기관 정보공개법의 시행 상황」, 15면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346956.pdf, 최종방문일: 2015.10.30).

64) 기타는 부작위에 대한 불복신청등이다.

표 10. 정보공개에 관한 소송 상황⁶⁵⁾

(단위 : 건)

			2013년도	2014년도
지방재판소 (제1심)	계속	신규제소	12	16
		전년도부터 계속	16	12
	합계	28	28	
	판결	9	13	
	취하	3	0	
	심리중(다음년도에 이월)	16	15	
고등재판소 (항소심)	계속	신규항소	3	10
		전년도부터 계속	4	2
	합계	7	12	
	판결	2	8	
	취하	1	0	
	심리중(다음년도에 이월)	4	4	
최고재판소 (상고심)	계속	신규상고	1	3
		전년도부터 계속	3	5
	합계	4	8	
	판결	1	5	
	취하	0	0	
	심리중(다음년도에 이월)	3	3	

65) 『2013년도 행정기관 정보공개법의 시행 상황』, 17면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346956.pdf, 최종방문일: 2015.10.30).

표 11. 공개청구 건수 및 불복신청 건수 등의 년도별 추이

표 11-1. 공개 청구 건수

(단위 : 건, %)

	개시청구건수		
		총무성	기타
2013년도	103,457(100)	18,794(18.2)	84,633(81.8)
2012년도	100,286(100)	16,568(16.5)	83,718(83.5)
2011년도	96,677(100)	16,497(17.1)	80,180(82.9)
2010년도	86,034(100)	16,411(19.1)	69,623(80.9)
2009년도	72,390(100)	16,691(23.1)	55,699(76.9)
2008년도	76,870(100)	15,414(20.1)	61,456(79.9)
2007년도	61,089(100)	16,029(26.2)	45,060(73.8)
2006년도	49,930(100)	14,426(28.9)	35,504(71.1)
2005년도	78,639(100)	14,867(18.9)	63,772(81.1)
2004년도	87,123(100)	16,105(18.5)	71,018(81.5)
2003년도	73,348(100)	13,929(19.0)	59,419(81.0)
2002년도	59,887(100)	13,157(22.0)	46,730(78.0)
2001년도	48,670(100)	16,811(34.5)	31,859(65.5)

표 11-2. 개시청구 사안의 처리 상황⁶⁶⁾

(단위 : 건, %)

	처리해야할 사안				사안의 처리상황			
	신규 접수	전년도 부터 이월	타기관 으로부터 수이송	계	개시결정 등을 한 사안	취하	타기관에 전부 이송	처리중 (차년도에 이월)
2013년	103,457	5,484	352	109,293 (100)	100,752 (92.2)	2,722 (2.5)	320 (0.3)	5,499 (5.0)
2012년	100,286	7,519	181	107,986 (100)	99,141 (91.8)	3,211 (3.0)	168 (0.1)	5,466 (5.1)
2011년	96,677	5,608	183	102,468 (100)	91,960 (89.7)	2,864 (2.8)	162 (0.2)	7,482 (7.3)
2010년	86,034	4,032	81	90,047 (100)	81,982 (90.9)	2,610 (2.9)	78 (0.1)	5,477 (6.1)
2009년	72,390	3,217	95	75,702 (100)	68,433 (90.4)	3,269 (4.3)	70 (0.1)	3,930 (5.2)
2008년	76,870	4,544	133	81,547 (100)	75,223 (92.2)	3,186 (3.9)	132 (0.2)	3,007 (3.7)
2007년	61,089	2,977	107	64,173 (100)	57,783 (90.0)	2,009 (3.1)	99 (0.2)	4,282 (6.7)
2006년	49,730	2,860	188	52,978 (100)	47,816 (90.3)	2,023 (3.8)	168 (0.3)	2,971 (5.6)
2005년	78,639	5,457	125	84,221 (100)	79,261 (94.1)	2,025 (2.4)	105 (0.1)	2,830 (3.4)
2004년	87,123	3,343	208	90,674 (100)	82,971 (91.5)	2,226 (2.5)	88 (0.1)	5,389 (5.9)
2003년	73,348	2,785	163	76,296 (100)	71,669 (93.9)	1,184 (1.6)	123 (0.1)	3,320 (4.4)
2002년	59,887	3,234	320	63,441 (100)	58,783 (92.7)	1,728 (2.7)	150 (0.2)	2,780 (4.4)
2001년	48,670	--	612	49,282 (100)	44,075 (89.4)	1,551 (3.1)	422 (0.9)	3,234 (6.6)

66) 『2013년도 행정기관 정보공개법의 시행 상황』, 2면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346956.pdf, 최종방문일: 2015.10.30).

표 11-3. 개시결정등의 건수⁶⁷⁾

(단위 : 건, %)

	개시결정등						
	계	개시결정			개시결정 중 공익 재량개시	개시결정 중 개시 실시신청이 없는 것	불개시 결정
		소계	전부개시	일부개시			
2013년	95,464 (100)	93,199 (97.6)	39,398 (41.3)	53,081 (56.3)	0	2,889 (3.0)	2,265 (2.4)
2012년	94,133 (100)	92,092 (97.8)	47,627 (50.6)	44,465 (47.2)	0	3,021 (3.2)	2,041 (2.2)
2011년	83,712 (100)	81,671 (97.6)	42,983 (51.4)	38,688 (46.2)	8 (0.0)	2,159 (2.6)	2,041 (2.4)
2010년	73,345 (100)	71,469 (97.5)	30,341 (41.4)	41,128 (56.1)	2 (0.0)	-	1,876 (2.5)
2009년	62,916 (100)	60,901 (96.8)	24,104 (38.3)	36,797 (58.5)	0	-	2,015 (3.2)
2008년	68,620 (100)	66,109 (96.3)	24,026 (35.0)	42,083 (61.3)	0	-	2,511 (3.7)
2007년	49,750 (100)	47,497 (95.5)	21,189 (42.6)	26,308 (52.9)	1 (0.0)	-	2,253 (4.5)
2006년	42,349 (100)	37,621 (88.8)	19,321 (45.6)	18,300 (43.2)	0	-	4,728 (11.2)
2005년	74,676 (100)	71,012 (95.1)	53,609 (71.8)	17,403 (23.3)	0	-	3,664 (4.9)
2004년	76,743 (100)	74,119 (96.6)	57,071 (74.4)	17,048 (22.2)	0	-	2,624 (3.4)
2003년	68,867 (100)	66,275 (96.2)	48,808 (70.9)	17,467 (25.3)	1 (0.0)	-	2,592 (3.8)
2002년	59,230 (100)	56,651 (95.7)	40,935 (69.1)	15,716 (26.6)	4 (0.01)	-	2,552 (4.3)
2001년	44,734 (100)	39,653 (88.6)	25,119 (56.1)	15,534 (32.5)	16 (0.04)	-	5,081 (11.4)

67) 「2013년도 행정기관 정보공개법의 시행 상황」, 3면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346956.pdf, 최종방문일: 2015.10.30).

표 11-4. 불개시 이유 내역⁶⁸⁾

(단위 : 건, %)

	불개시결정과 일부개시 결정의 합계	내역			
		불개시정보	행정문서부 존재	존부응답 거부	기타
2013년도	56,066(100)	53,798(96.0)	2,380(4.2)	313(0.6)	211(0.4)
2012년도	46,506(100)	44,582(95.9)	2,287(4.9)	152(0.3)	124(0.3)
2011년	40,729(100)	40,325(99.0)	2,278(5.6)	329(0.8)	129(0.3)
2010년	43,004(100)	41,439(96.4)	2,212(5.1)	229(0.5)	130(0.3)
2009년	38,812(100)	38,532(99.3)	2,095(5.4)	201(0.5)	125(0.3)
2008년	44,594(100)	43,028(96.5)	2,549(5.7)	226(0.5)	226(0.5)
2007년	28,561(100)	28,160(98.6)	2,494(8.7)	172(0.6)	192(0.7)
2006년	23,028(100)	19,456(84.5)	4,545(19.7)	205(0.9)	259(1.1)
2005년	21,067(100)	19,016(90.2)	3,498(16.6)	156(0.7)	75(0.4)
2004년	19,672(100)	17,568(89.3)	2,173(11.0)	365(1.9)	43(0.2)
2003년	20,059(100)	18,229(90.9)	2,059(10.3)	202(1.0)	32(0.2)
2002년	18,268(100)	16,950(92.8)	1,749(9.6)	390(2.1)	18(0.1)
2001년	19,615(100)	16,409(83.7)	3,151(16.1)	278(1.4)	37(0.2)

68) 「2013년도 행정기관 정보공개법의 시행 상황」, 6면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346956.pdf, 최종방문일: 2015.10.30).

표 11-5. 정보공개에 관한 소송 상황(제1심)⁶⁹⁾

(단위 : 건)

	지방법원(제1심)					
	신규제소	전년도에서 이월	계속 계	판결	취하	심리중 (차년도에 이월)
2013년	12	16	28	9	3	16
2012년	16	12	28	13	0	15
2011년	12	14	26	10	4	12
2010년	13	15	28	11	3	14
2009년	14	10	24	7	0	17
2008년	16	14	30	17	3	10
2007년	13	29	40	24	3	13
2006년	22	24	46	17	0	29
2005년	28	14	42	14	4	24
2004년	21	16	37	15	5	17
2003년	15	37	52	30	4	18
2002년	39	11	50	9	4	37
2001년	15	--	15	3	1	11

69) 「2013년도 행정기관 정보공개법의 시행 상황」, 17면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346956.pdf, 최종방문일: 2015.10.30).

표 11-6. 정보공개에 관한 소송 상황(상고심)⁷⁰⁾

(단위 : 건)

	최고재판소(상고심)					
	신규상고	전년도에서 이월	계속 계	판결	취하	심리중 (차년도에 이월)
2013년	1	3	4	1	0	3
2012년	3	5	8	5	0	3
2011년	6	5	11	6	0	5
2010년	1	8	9	4	0	5
2009년	5	6	11	3	0	8
2008년	4	7	11	5	0	6
2007년	8	2	10	3	0	7
2006년	2	11	13	11	0	2
2005년	5	9	14	2	0	12
2004년	7	1	8	0	0	8
2003년	3	0	3	2	0	1
2002년	0	0	0	--	0	--
2001년	0	--	0	--	--	--

70) 『2013년도 행정기관 정보공개법의 시행 상황』, 17면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346956.pdf, 최종방문일: 2015.10.30).

제 2 절 독립행정법인등의 경우

1. 2013년 독립행정법인 등 정보공개법의 시행 상황

표 1. 공개 청구 건수⁷¹⁾

(단위 : 건)

	개시청구건수		
		본사등	기타 ⁷²⁾
2013년(비율)	7,205 (100)	6,244 (86.7)	961 (13.3)
2012년	7,315 (100)	6,333 (86.6)	982 (13.4)

표 2. 개시청구사안의 처리 상황

(단위 : 건, %)

	처리해야할 사안				사안의 처리상황			
	신규 접수 사안	전년로 부터 이월된 사안	타기관 으로부터 이송된 사안	계	개시 결정된 사안	취하된 사안	타기관에 전부 이송한 사안	처리중 사안 (다음년도에 이월)
2013년도 (비율)	7,205	606	8	7,819 (100)	6,338 (81.1)	479 (6.1)	0 (0)	1,002 (12.8)
2012년	7,315	589	4	7,908 (100)	6,885 (87.1)	413 (5.2)	1 (0.0)	609 (7.7)

71) 「2013년 독립행정법인 등 정보공개법의 시행 상황」, 4면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346959.pdf, 최종방문일: 2015.10.30)

72) ‘본사등’은 본사등의 창구에 접수된 것을 말하고, 기타는 지방지사등, 본사등의 창구 이외에 접수된 것을 말한다.

표 3. 개시결정 등의 건수⁷³⁾

(단위 : 건, %)

	개시결정등						
	계	개시결정			(개시결정된 것 중) 공익재량 개시	(개시결정된 것 중) 개시실시의 신청없이 이루어진 경우	불개시결정
		소계	전부개시	일부개시			
2013년	5,953 (100)	5,287 (88.8)	2,624 (44.1)	2,663 (44.7)	1 (0.0)	128 (2.2)	666 (11.2)
2012년	6,362 (100)	5,708 (89.7)	2,708 (42.6)	3,000 (47.1)	0 (0)	118 (1.9)	654 (10.3)

표 4. 불개시 이유 내역⁷⁴⁾

(단위 : 건, %)

	불개시결정과 일부개시결정 건수	이유 내역			
		불개시정보	법인문서부 존재	존부응답 거부	기타 ⁷⁵⁾
2013년	3,329 (100)	2,722 (81.8)	626 (18.8)	33 (1.0)	10 (0.3)
2012년	3,654 (100)	3,043 (83.3)	617 (16.9)	32 (0.9)	10 (0.3)

73) 「2013년 독립행정법인 등 정보공개법의 시행 상황」, 11면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346959.pdf, 최종방문일: 2015.10.30)

74) 「2013년 독립행정법인 등 정보공개법의 시행 상황」, 18면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346959.pdf, 최종방문일: 2015.10.30)

75) 기타는 형식상의 불비 등을 이유로 하는 것을 말한다.

표 5. 불 개시 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것과 존부응답거부에 의한 것의 내역⁷⁶⁾

(단위 : 개, %)

불개시정보의 구분		불개시정보에 해당 (비율)	존부응답거부 (비율)
		2,772 (100)	33 (100)
내역	제1호 개인에 관한 정보	1,998 (73.4)	27 (81.8)
	제2호 법인등에 관한 정보	1,605 (59.0)	6 (18.1)
	제3호 심의, 검토등에 관한 정보	38 (1.4)	0 (0)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한 정보	568 (20.9)	1 (3.0)
	국가안전등에 관한 정보	14 (0.5)	0 (0)
	공공의 안전등에 관한 정보	46 (1.7)	1 (3.0)
	기타	522 (19.2)	0 (0)

표 6. 불복신청 건수

(단위 : 건)

	2013년	2012년
불복신청건수	130	85

76) 「2013년 독립행정법인 등 정보공개법의 시행 상황」, 21면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346959.pdf, 최종방문일: 2015.10.30)

표 7. 불복신청 이유

(단위 : 건)

	개시청구자로부터의 불복신청	제3자로부터의 불복신청	계
불개시결정 (일부개시 결정의 불개시 부분을 포함)에 대한 불복신청	불개시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불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80		127
	법인문서의 부존재를 이유로 하는 불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39		
	존부응답거부에 의한 불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8		
	형식상 불비 또는 권리남용을 이유로 하는 불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0		
개시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법인문서의 특정에 대한 불복 (개시결정된 법인문서 이외에도 개시청구대상문서가 있고, 개시청구한 문서와 개시결정된 문서가 다른 경우 등) 11	자기와 관련된 정보가 기록된 행정문서를 개시한다는 결정에 대한 불복 0	11
기타 불복신청	부작위에 대한 불복 8		13
	사안의 이송, 기한의 연장에 관한 불복 0		
	결정내용에 관계없는 사항에 대한 불복 5		
	151	0	151

표 8. 불복신청 건수와 처리 상황⁷⁷⁾

(단위 : 건, %)

	처리해야 할 건수			처리 완료	취하	처리중(다음 연도에 이월)			
	신규 신청 건수	전년도에서 이월된 건수				처리방침, 심사회에의 자문 준비중 등	심사회에서 자문중	심사회의 답변을 받고 재결 결정 준비중	
2013년 (비율)	214 (100)	130	84	78 (36.4)	1 (0.5)	135 (63.1)	33 (15.4)	80 (37.4)	22 (10.3)
2012년	158 (100)	85	73	68 (54.4)	6 (3.6)	84 (42.0)	18 (7.1)	55 (27.2)	11 (7.7)

표 9. 불복신청에 대한 결정등의 상황⁷⁸⁾

(단위 : 개, %)

	신청기각	신청인용	신청일부인용	각하	기타 ⁷⁹⁾	계
심사회에 자문하지 않고 재결·결정 등을 한 것	-	1	-	8	8	17
심사회에 자문하여, 답변을 받고 재결·결정 등을 한 것	37	5	19	-	0	61
계	37 (47.4)	6 (7.7)	19 (24.3)	8 (10.3)	8 (10.3)	78 (100)

77) 「2013년 독립행정법인 등 정보공개법의 시행 상황」, 11면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346959.pdf, 최종방문일: 2015.10.30)

78) 「2013년 독립행정법인 등 정보공개법의 시행 상황」, 14면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346959.pdf, 최종방문일: 2015.10.30)

79) 기타는 부작위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한다.

표 10. 정보공개소송 상황⁸⁰⁾

(단위 : 건)

		2013년	2012년
지방재판소 (제1심)	신규제소	0	2
	전년도부터 계속	2	0
	계속 합계	2	2
	판결	1	0
	취하	0	0
	심리중(다음 년도에 이월)	1	2
고등재판소 (항소심)	신규항소	1	0
	전년도부터 계속	0	0
	계속 합계	1	0
	판결	0	0
	취하	0	0
	심리 중(다음 년도에 이월)	1	0
최고재판소 (상고심)	신규상고	0	0
	전년도부터 계속	0	0
	계속 합계	0	0
	판결	0	0
	취하	0	0
	심리중(다음 년도에 이월)	0	0

80) 『2013년 독립행정법인 등 정보공개법의 시행 상황』, 17면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346959.pdf, 최종방문일: 2015.10.30)

표 11. 공개청구 건수 및 불복신청 건수 등의 년도별 추이

표 11-1. 공개 청구 건수⁸¹⁾

(단위 : 개, %)

	개시청구건수		
		본사등	기타
2013년	7,205 (100)	6,244 (86.7)	961 (13.3)
2012년	7,315 (100)	6,333 (86.6)	982 (13.4)
2011년	6,162 (100)	5,235 (85.0)	927 (15.0)
2010년	4,972 (100)	4,032 (81.1)	940 (18.9)
2009년	3,509 (100)	3,014 (85.9)	495 (14.1)
2008년	3,697 (100)	2,938 (79.5)	759 (20.5)
2007년	5,794 (100)	4,902 (84.6)	892 (15.4)
2006년	4,316 (100)	3,375 (78.2)	941 (21.8)
2005년	4,487 (100)	3,242 (72.3)	1,245 (27.7)
2004년	6,594 (100)	5,314 (100)	1,280 (19.4)
2003년	5,821 (100)	4,310 (100)	1,511 (26.0)
2002년	5,567 (100)	4,549 (100)	1,018 (18.3)

81) 「2013년 독립행정법인 등 정보공개법의 시행 상황」, 4면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346959.pdf, 최종방문일: 2015.10.30)

표 11-2. 개시청구 사안의 처리 상황⁸²⁾

(단위 : 건, %)

	처리해야할 사안				사안의 처리상황			
	신규접수 사안	전년도 부터 이월된 사안	타기관 으로부터 이송된 사안	계	개시결정 등을 한 사안	취하된 사안	타기관에 전부이송 한 사안	처리중 사안 (다음년도에 이월)
2013년	7,205	606	8	7,819 (100)	6,338 (81.1)	479 (6.1)	0 (0)	1,002 (12.8)
2012년	7,315	589	4	7,908 (100)	6,885 (87.1)	413 (5.2)	1 (0.0)	609 (7.7)
2011년	6,162	397	0	6,559 (100)	5,802 (88.5)	168 (2.5)	1 (0.0)	588 (9.0)
2010년	4,972	281	4	5,257 (100)	4,748 (90.3)	116 (2.2)	0 (0)	393 (7.5)
2009년	3,509	200	4	3,713 (100)	3,338 (89.9)	95 (2.6)	0 (0)	280 (7.5)
2008년	3,697	177	7	3,881 (100)	3,580 (92.2)	101 (2.6)	0 (0)	200 (5.2)
2007년	5,794	333	2	6,129 (100)	5,825 (95.0)	125 (2.0)	1 (0.1)	178 (2.9)
2006년	4,316	156	10	4,482 (100)	4,029 (89.9)	123 (2.7)	2 (0.1)	328 (7.3)
2005년	4,487	354	12	4,853 (100)	4,554 (93.8)	135 (2.8)	1 (0.0)	155 (3.2)
2004년	6,594	733	58	7,385 (100)	6,786 (91.9)	282 (3.8)	6 (0.1)	311 (4.2)
2003년	5,821	420	33	6,274 (100)	5,324 (84.9)	301 (4.8)	11 (0.2)	638 (10.1)
2002년	5,567	-	8	5,575 (100)	5,093 (91.3)	65 (1.2)	3 (0.1)	414 (7.4)

82) 『2013년 독립행정법인 등 정보공개법의 시행 상황』, 8면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346959.pdf, 최종방문일: 2015.10.30)

표 11-4. 개시결정등의 건수⁸³⁾

(단위: 건, %)

	개시결정등						
	계	소계	전부	일부	공익재량 개시	개시신청 없이 개시 한 건수	불개시 결정
			개시	개시			
2013년	5,953 (100)	5,287 (88.8)	2,624 (44.1)	2,663 (44.7)	1 (0.0)	128 (2.2)	666 (11.2)
2012년	6,362 (100)	5,708 (89.7)	2,708 (42.6)	3,000 (47.1)	0 (0)	118 (1.9)	654 (10.3)
2011년	5,403 (100)	4,876 (90.3)	2,597 (48.1)	2,279 (42.2)	0 (0)	62 (1.2)	527 (9.7)
2010년	4,670 (100)	4,300 (92.1)	2,198 (47.1)	2,102 (45.0)	0 (0)	-	370 (7.9)
2009년	3,252 (100)	2,924 (89.9)	1,598 (49.1)	1,326 (40.8)	0 (0)	-	328 (10.1)
2008년	3,440 (100)	2,921 (84.9)	1,329 (38.6)	1,592 (46.3)	0 (0)	-	519 (15.1)
2007년	5,568 (100)	5,053 (90.8)	2,764 (49.6)	2,289 (41.2)	0 (0)	-	515 (9.2)
2006년	3,878 (100)	3,406 (87.8)	1,693 (43.7)	1,713 (44.2)	0 (0)	-	472 (12.2)
2005년	4,307 (100)	3,892 (90.4)	1,792 (41.6)	2,100 (48.8)	0 (0)	-	415 (9.6)
2004년	6,818 (100)	6,265 (91.9)	1,927 (28.3)	4,338 (63.6)	1 (0.0)	-	553 (8.1)
2003년	5,484 (100)	5,011 (91.4)	1,385 (25.3)	3,626 (66.1)	1 (0.0)	-	473 (8.6)
2002년	4,600 (100)	3,963 (86.2)	1,043 (22.7)	2,920 (63.5)	9 (0.2)	-	637 (13.8)

83) 『2013년 독립행정법인 등 정보공개법의 시행 상황』, 11면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346959.pdf, 최종방문일: 2015.10.30)

표 11-4. 불개시 이유 내역⁸⁴⁾

(단위 : 건, %)

	불개시결정과 일부개시결정의 합계	내역			
		불개시정보	법인문서부 존재	존부응답 거부	기 타
2013년	3,329 (100)	2,722 (81.8)	626 (18.8)	33 (1.0)	10 (0.3)
2012년	3,654 (100)	3,043 (83.3)	617 (16.9)	32 (0.9)	10 (0.3)
2011년	2,806 (100)	2,414 (86.0)	490 (17.5)	42 (1.5)	21 (0.7)
2010년	2,472 (100)	2,150 (87.0)	388 (15.7)	15 (0.6)	8 (0.3)
2009년	1,654 (100)	1,477 (89.3)	310 (18.7)	23 (1.4)	8 (0.5)
2008년	2,111 (100)	1,763 (83.5)	520 (24.6)	12 (0.6)	52 (2.5)
2007년	2,804 (100)	2,750 (98.1)	449 (16.0)	14 (0.5)	21 (0.7)
2006년	2,185 (100)	1,852 (84.8)	412 (18.9)	31 (1.4)	8 (0.4)
2005년	2,515 (100)	2,198 (87.4)	385 (15.3)	26 (1.0)	26 (1.0)
2004년	4,891 (100)	4,491 (91.8)	500 (10.2)	21 (0.4)	5 (0.1)
2003년	4,099 (100)	3,702 (90.4)	393 (9.6)	26 (0.6)	0 (0)
2002년	3,557 (100)	3,037 (85.4)	574 (16.1)	16 (0.4)	0 (0)

표 11-5. 불복신청 접수 상황⁸⁵⁾

(단위 : 건)

	2013 년	2012 년	2011 년	2010 년	2009 년	2008 년	2007 년	2006 년	2005 년	2004 년	2003 년	2002 년
건수	130	85	66	77	75	109	206	153	121	124	77	47

84) 「2013년 독립행정법인 등 정보공개법의 시행 상황」, 6면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346959.pdf, 최종방문일: 2015.10.30)

85) 「2013년 독립행정법인 등 정보공개법의 시행 상황」, 24면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346959.pdf, 최종방문일: 2015.10.30)

표 11-6. 불복신청 건수 및 처리 상황⁸⁶⁾

(단위 : 건, %)

	처리 해야할 건수	신구 접수 건수	전년도 부터 이월된 건수	처리 완료	취하	처리중 (다음 년도에 이월)	처리방침, 자문의 요부등 검토중, 자문준비 중 등	심사회 에 자문 중	심사회 의 답신 후 결정 준비 중
2012년	158 (100)	85	73	68 (54.4)	6 (3.6)	84 (42.0)	18 (7.1)	55 (27.2)	11 (7.7)
2011년	169 (100)	66	103	92 (54.4)	6 (3.6)	71 (42.0)	12 (7.1)	46 (27.2)	13 (7.7)
2010년	212 (100)	77	135	106 (50.0)	4 (1.9)	102 (48.1)	11 (5.2)	85 (40.1)	6 (2.8)
2009년	196 (100)	75	121	62 (31.6)	7 (3.6)	127 (64.8)	6 (3.1)	92 (46.9)	29 (14.8)
2008년	295 (100)	109	186	165 (55.9)	8 (2.7)	122 (41.4)	20 (6.8)	101 (34.2)	1 (0.3)
2007년	399 (100)	206	193	196 (49.1)	18 (4.5)	185 (46.4)	16 (4.0)	127 (31.8)	42 (10.5)
2006년	296 (100)	153	143	73 (24.7)	30 (10.1)	193 (65.2)	70 (23.6)	96 (32.4)	27 (9.1)
2005년	244 (100)	120	124	105 (43.0)	9 (3.7)	126 (51.6)	80 (32.8)	43 (17.6)	3 (1.2)
2004년	188 (100)	124	64	46 (24.5)	13 (6.9)	129 (68.6)	54 (28.7)	53 (28.2)	22 (11.7)
2003년	115 (100)	77	38	44 (38.3)	28 (24.3)	43 (37.4)	24 (20.9)	16 (13.9)	3 (2.6)
2002년	47 (100)	47		3 (6.4)	2 (4.2)	42 (89.4)	29 (61.7)	13 (27.7)	0 (0)

86) 『2013년 독립행정법인 등 정보공개법의 시행 상황』, 26면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346959.pdf, 최종방문일: 2015.10.30)

표 11-7. 심사위원회의 심사 상황⁸⁷⁾

(단위 : 건, %)

	신규 자문 건수	전년도 로부터 이월된 건수	계	답신건수			취하된 건수	다음 년도에 이월한 건수	
				계	자문청 판단이 타당함 지	자문청 판단이 일부 타당함			자문청 판단이 타당하지 않음
2013년	94	51	145	71 (100)	52 (73.3)	16 (22.5)	3 (4.2)	2	72
2012년	73	36	109	55 (100)	31 (56.4)	18 (32.7)	6 (10.9)	3	51
2011년	48	79	127	89 (100)	69 (77.5)	15 (16.9)	5 (5.6)	2	36
2010년	55	90	145	60 (100)	28 (46.7)	17 (28.3)	15 (25.0)	6	79
2009년	57	99	156	54 (100)	38 (70.4)	15 (27.8)	1 (1.9)	12	90
2008년	83	112	195	92 (100)	76 (82.6)	10 (10.9)	6 (6.5)	4	99
2007년	156	79	235	114 (100)	95 (83.3)	16 (14.0)	3 (2.6)	9	112
2006년	117	32	149	62 (100)	43 (69.4)	13 (21.0)	6 (9.7)	8	79
2005년	65	46	111	71 (100)	40 (56.3)	24 (33.8)	7 (9.9)	8	32
2004년	82	24	106	57 (100)	37 (64.9)	15 (26.3)	5 (8.8)	3	46
2003년	51	13	64	45 (100)	25 (55.6)	16 (35.6)	4 (8.8)	3	16
2002년	13	-	13	0	-	-	-	0	13

87) 『2013년 독립행정법인 등 정보공개법의 시행 상황』, 31면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346959.pdf, 최종방문일: 2015.10.30)

표 11-8. 정보공개에 관한 소송 상황⁸⁸⁾

(단위 : 건)

	지방법원(제1심)					
	신규접수	전년도로부터 이월	계속 합계	판결	취하	심리중 (다음년도에 이월)
2013년	0	2	2	1	0	1
2012년	2	0	2	0	0	2
2011년	1	1	2	0	2	0
2010년	1	0	1	0	0	1
2009년	1	4	5	4	1	0
2008년	4	3	7	2	1	4
2007년	4	1	5	2	0	3
2006년	1	1	2	1	0	1
2005년	2	2	4	3	0	1
2004년	2	5	7	5	0	2
2003년	3	1	4	2	0	2
2002년	1	-	1	0	0	1

88) 「2013년 독립행정법인 등 정보공개법의 시행 상황」, 32면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346959.pdf, 최종방문일: 2015.10.30)

제 4 장 일본정보공개의 현황

	고등재판소(항소심)					
	신규항소	전년도로부터 이월	계속 합계	판결	취하	심리중 (다음년도에 이월)
2013년	1	0	1	0	0	1
2012년	0	0	0	0	0	0
2011년	0	0	0	0	0	0
2010년	0	0	0	0	0	0
2009년	2	0	2	2	0	0
2008년	1	0	1	1	0	0
2007년	1	0	1	1	0	0
2006년	1	2	3	3	0	0
2005년	3	3	6	4	0	2
2004년	4	1	5	2	0	3
2003년	2	0	2	1	0	1
2002년	0	-	0	0	0	0

제 3 절 요약

일본의 정보공개 현황 실례를 살펴보면, 행정기관의 2013년도의 경우 94,464건의 신청건수 대비 93,199건의 개시결정이 내려져 97.6%의 높은 인용율을 보이고 있다. 기각사유를 살펴보면 불개시결정 건수 56,066건 중 불개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가 53,798건으로 96%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불개시정보 중에서도 개인에 관한 사항이 43,569건(81%), 법인에 관한 사항이 44,417건(82.6%)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존부응답거부도 313건(0.6%)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에서 위와 같이 인용율도 높고, 불개시정보 건수 역시 높게 나타나면서 양자 사이의 불일치를 보이고 있는 것은 통계 분석시 그 사유를 중첩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가령 일부개시의 경우 개시된 부분으로서는 인용에 포함되지만, 불개시부분은 기각에 포함되어 중첩적으로 산정되는 것이다. 개인이나 법인(양자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도 중첩적으로 산정된다.

한편 독립행정법인의 2013년도의 경우, 7,205건의 신청건수 대비 6,338건의 개시결정이 내려져 81.1%의 높은 인용율을 보이고 있다. 기각사유를 살펴보면 불개시결정 건수 3,329건 중 불개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가 2,722건으로 81.8%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불개시정보 중에서도 개인에 관한 사항이 1,998건(73.4%), 법인에 관한 사항이 1,605건(59%)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존부응답거부도 33건(1.0%)를 차지하고 있다.⁸⁹⁾

89) 중복산정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경우와 동일하다.

제 5 장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 우리나라와 일본이 정보공개청구법 비교표

구 분	한국 정보공개청구법	일본 행정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개 청구 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민(법 제5조제1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인 2) 법인 3)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 외국인 포함(법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시청구권자로 ‘누구든지(何人も)’라고 규정하고 있음(법 제3조). 이에 따라 내국인, 외국인을 불문하고 자연인,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모두 청구권자가 됨.
공개 대상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법 제2조 제3호, 시행령 제2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국가기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②지방자치단체 ③「공공기관운영법」상의 공공기관 ④각급 학교 ⑤지방자치단체 투자 기관 ⑥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특수법인 ⑦사회복지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관(법 제2조 제1항, 시행령 제1조 제1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국가기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회와 법원이 제외되어 있음. 2) 중앙행정기관(내각부에 설치된 기관, 「내각부설치법」에 따라 내각부에 설치된 위원회 등의 기관) 3) 국가행정조직법에 따른 기관(경찰청, 검찰청 등) 4) 회계검사원 5) 공내부 및 그 소속기관 ②지방자치단체 ③「독립행정법인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행정법인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종 독립행정법인 2) 국립대학법인

구 분	한국 정보공개청구법	일본 행정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개 대상 기관	⑧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3)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 4) 특수법인(일본중앙경마회) 5) 허가법인(일본은행)
공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및 이에 기록된 사항(법 제2조 제1호) - 전자문서가 포함되며, 그 밖에 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도 공개대상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관의 직원이 직무상 작성 하였거나 취득한 문서, 도면 및 전자기록(법 제2조 제2항) - 우리나라 법제가 “매체에 기록된 사항”도 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일본은 문서, 전자 기록 등의 매체 자체를 공개대상으로 한다.
비공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개 대상정보(법 제9조 제1항 각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②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③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사항 ④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⑤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 ⑥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개 대상정보(법 제5조 각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개인에 관련된 정보로서 해당 정보에 포함된 성명, 생년월일 그 밖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 또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는 없으나 공개됨으로써 개인의 권리에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 ②법인 그 밖의 단체에 관련된 정보 또는 상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당해 사업에 관계된 정보로서 아래 각목에 규정된 것. ③공개됨으로서 국가안전을 해칠 우려, 외국 또는 국제기관 등의 신뢰관계에 손상을 줄 우려 또는 이국 또는 국제기관등과의 교섭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④공개됨으로써 범죄의 예방, 진압 또는 수사, 공소유지, 형의

구 분	한국 정보공개청구법	일본 행정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비공개 정보	<p>⑦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p> <p>⑧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p>	<p>집행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행정기관의 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p> <p>⑤국가기관, 독립행정법인 등, 지방공공단체 및 지방독립행정법인의 내부 또는 상호간의 심의, 검토 또는 협의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됨으로써 솔직한 의견교환 또는 의사결정의 중립성이 부당하게 손상될 우려, 부당하게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 또는 특정한 사람에게 부당하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p> <p>⑥국가기관, 독립행정법인 등, 지방공공단체 및 지방독립행정법인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됨으로써 당해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상, 당해사무 또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p> <p>• 행정문서의 존부에 관한 정보 (제8조)</p> <p>개시청구에 대하여 당해개시청구에 관계된 행정문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답하는 것만으로도 불개시정보를 개시하는 것이 될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행정문서의 존부를 밝히지 않고 당해개시청구를 거부 할 수 있음.</p>

구 분	한국 정보공개청구법	일본 행정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 공개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 또는 구두로 가능(법 제10조) • 서면의 경우 ①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기재해야 함 • 구두의 경우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 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법 제4조 제1항) 또는 전자 신청 가능(일본 총무성령 제39호 제3조) • 양자 모두 ① 개시청구를 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거소 및 법인 기타 단체는 그 대표자의 성명, ② 행정문서의 명칭 기타 개시청구와 관련된 행정문서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제4조 제1항), ③ 개시실시 방법에 관한 사항(법 제14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법 제2조제2호) • 사본교부(법 제2조제2호) • 전자적 공개(법 제2조제2호, 법 제1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사본교부, 전자적 공개(법 제14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공개 의무 -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분리가능성이 인정 되는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 하고 공개해야 함(제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공개 의무 -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분리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 하고 공개해야 함(제6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결정시 일시, 장소 등을 명시 하여 통지(법제13조제1항) • 비공개결정시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법 제13조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부 및 일부 공개결정시 그 취지 및 일시, 장소, 개시방법, 수수료 등을 명시하여 통지(법 제9조제1항 및 시행령 제9조) • 비공개결정시 지체 없이 문서로 그 취지를 통지(법 제9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표의무 규정 ①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②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표의무 규정 존재하지 않음. 다만 법 제24조에서 “정부는 보유 하는 정보의 공개의 총합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 기관이 보유하는 정보가 적시에,

구 분		한국 정보공개청구법	일본 행정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 공개 절차	사전 공표	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③예산 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④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공개 범위, 주기, 시기, 방법 등을 미리 공표하고 그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함(법 제7조 제1항).	또한 적절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명백하게 공개되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제공에 관한 시책을 충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고 주의적, 혼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임.
	공개 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 까지 연장 • 공개결정 간주규정 없음(현행법에서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까지 연장(법 제10조) • 공개결정 간주 규정은 없음.
	비용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비범위에서 청구인 부담(법 제17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비범위에서 청구인 부담(법 제16조제1항)
불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일 이내 이의신청(법 제18조 제1항). 7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지(법 제18조제2항) • 행정심판(법 제19조제1항). 이의 신청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청구가 가능(법 제19조제2항) •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일 이내 불복신청(법 제18조, 행정불복심사법 제45조). 2주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지(법 제21조, 제13조 제3항) • 행정사건소송법 제12조 제4항에 의하여 불복신청에 대하여 행정소송가능(법 제21조).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청구된 사실의 통보(법 제11조제3항), 3일 이내에 공개거부 요청가능(법 제21조제1항) • 공개사실의통지 및 행정쟁송(법 제21조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청구된 사실의 통보 및 의견 제출 기회 부여(법 제13조), 2주일일 이내에 공개거부 요청가능(법 제13조제3항) • 불복신청(법 제20조) 및 행정소송(법 제21조)

2.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결론부터 말하면 정보공개법제를 전체적으로 조망하여 볼 때 우리의 법제가 일본의 그것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 있는 반면, 일본의 법제나 판례 등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가 피해야 할 모습도 있다. 아래에서는 항목 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정보공개대상기관을 보면 우리나라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교육관련기관까지 포함하여 일본보다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바, 교육의 공공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법제가 타당하다. 일본은 국공립대학법인만이 그 대상이다. 또한 국회와 법원을 대상기관에 포함하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 법제가 우수하다고 하겠다.⁹⁰⁾

다음으로 법률에서 외국인을 청구권자로 명시한 것은 일본의 법제를 참고하여야 한다. 우리 정보공개법은 외국인의 청구권 주체성 여부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야 할 것이다.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도 일본이 정보 자체가 아니라 문서, 도화 등 기록매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기록 매체 뿐만 아니라 이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 자체도 공개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법제가 우수하다.

비공개정보의 범위, 즉 정보공개예외사유는 우리 법제가 일본에 비하여 다소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익형량에 있어서 국민의 알권리보다는 개인 또는 법인의 개인정보보호나 국가안보 등의 공익에 비중을 더 많이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비공개사유를 인정하는데 행정기관의 광범한 재량이 인정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의 알권리에 복무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

90) 국회와 법원이 정보공개대상기관에서 제외된 일본 법제가 특이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하게 된다. 다만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별 차이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오히려 일본은 우리나라 법제에는 없는 ‘문서존부응답거부’를 인정하고 있는바, 국가안보를 비롯한 국가업무수행이나 외교관계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密行主義에 근거한 ‘문서존부응답거부’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판례의 경우 일본과 우리나라가 대동소이하다. 즉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공개거부 혹은 부분공개를 결정한 행정기관의 결정을 추인하여 주는 경향이 그것이다. 우리는 오히려 정보공개범위를 좁히고 있는 일본의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가령 법문에서 명확히 부분개시를 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하나의 정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공개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로 인정하고 있는 태도가 그것이다.

정보공개현황의 공표는 일본의 그것이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 개별 연도별로 정보공개청구건수, 인용건수, 비공개사유별 현황, 불복신청 인용건수, 소송건수, 소송현황까지도 상세히 공표하고 있고, 이들 항목별 현황을 10년 동안의 추이표를 만들어 다시 제공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마지막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보공개종합안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도 본받을 만하다.

제 6 장 결 론

이상에서 우리는 일본 정보공개법제 및 정보공개현황을 살펴보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정보공개법을 제정한 일본 정보공개법제는 지방 조례 차원에서 먼저 제정되어 중앙정부가 입법화하게 된 것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이다.

일본은 정보공개대상기관에 따라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독립행정법인등이 보유하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는데 규율 대상기관 이외의 나머지 점은 동일하다. 행정기관 중에는 국회와 법원이 제외되어 있고, 모든 교육기관을 대상기관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국공립대학법인만이 대상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외국인을 정보공개청구권자로 법률상 인정한 것은 세계화 추세에 따른 것으로 도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보공개청구 및 개시절차, 비공개정보의 범위, 불복절차 등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법제가 거의 유사하나, 비공개정보를 인정하는 판례의 태도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바, 일본 최고재판소가 행정기관의 장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출한 접대비, 식대의 상대방에 대한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하여 비공개결정을 추인하는 태도는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 판례의 추이를 앞으로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가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총무성에 정보공개 종합안내소를 설치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보공개 안내소를 두고 있는 점, 정보공개현황을 공표함에 있어서 연도별, 항목별로 상세히 공표하고 있는 점은 우리가 본받을 만 하다.

무릇 비교법적 연구의 목적은 이를 통하여 우리 법제의 정비 및 판례 이론 구성에 있어서 참고가 되고자 함에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연구(필자가 담당한 일본의 경우에 국한됨)를 통하여는 오히려 일본 법제보다 우리나라 법제가 우세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각 연구자들이 나라별로 정보공개법제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담당 나라들의 정보공개법제 및 판례들과 우리나라의 그것을 개별적으로 상세히 비교하는 것은 상당 부분 중복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연구범위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지면의 제약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담당한 일본 및 다른 연구자들이 담당한 독일, 프랑스, 호주, 핀란드 등의 정보공개법제를 일람하여 우리 정보공개법제를 정비함에 있어 국민의 알권리에 복무하고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일조할 수 있는 연구가 되었으면 바램이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박정훈, “일본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제비에 관한 정보공개의 판례법리”,
공법학연구 제10권 제2호, 2008
- 신광렬, “알 권리와 정보공개청구권”, 헌법판례해설 I, 사법발전재단,
2010
- 양 건, 헌법강의 제4판, 법문사, 2014
- 유진식,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행정판례연구 19-1, 박영사, 2014
- 채우석, “일본정보공개법의 의의와 과제”, 송실대학교 법학논총 제
13집, 2003
- 채우석, “最近의 情報公開判例 : 日本의 最高裁判所の 判例를 中心
으로”, 사회과학논총 제6권, 2003
- 채우석, “환경행정(環境行政)과 정보공개(情報公開)”, 환경법연구 제29권
제2집, 2007
- 최정민, 김유승, “국내 정보공개 연구 동향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권 3호, 2013
- 한규인, “일본에 있어서 정보공개제도화와 한국에서의 제도 도입
전략”, 한국행정학보, 제27권 제4집, 1993

외국문헌

- 宇賀克也, 新情報公開法の 逐條解説, 有斐閣, 2002
- 宇賀克也, 情報公開の理論と實務, 有斐閣, 2005

참고 문헌

宇賀克也, 情報公開・個人情報保護 : 最新重要裁判例・審査會答申の紹介と分析, 有斐閣, 2013

宇賀克也, 知事交際費の情報公開 : 大版副知事交際費訴訟第二次上告審判決を中心にして, 法學教室 253号, 2001

宇賀克也, 情報公開條例における「公文書」概念についての最高裁判決, 法學教室 265号, 2002

松井茂記, 情報公開法(第2版), 有斐閣, 2003

松村我生, 情報公開法をめぐる諸問題(上) : 情報公開審査會の答申を答まえて, ジュリスト 1240号, 2003

松村我生, 情報公開法をめぐる諸問題(下) : 情報公開審査會の答申を答まえて, ジュリスト 1241号, 2003

三宅弘, 情報公開に基づく行政文書の開始請求に對する不開示決定の取消訴訟において, 不開示とされた文書を檢證の目的として被告にその提示を命ずることの許否, 民商法雜誌 140券 6号, 2009

奥平康弘, 中間報告を讀んで”, ジュリスト1093号, 1996

最高裁判所事務總局行政局, 行政裁判資料 第74号 : 情報公開訴訟職務資料, 法曹會,

부 록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공개 청구 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국민(법 제5조 제1항) 1) 자연인 2) 법인 3)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외국인 포함 (법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적 영역에 속한 공문서에 접근할 권리(법 제9조 제1항) → 모든 사람(개인, 법인 포함) 공적영역에 속하지 않는 정보에 접근할 권리(법 제11조 제1항) → 당사자(즉, 자신의 권리, 이익 또는 의무가 당해 사안과 관련된 신청인, 항고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구나(any person)” (5 U.S.C. § 552 (a)(3)(A)) 1) 자연인 2) 법인 3)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외국인 포함 수형자 포함 	모든 국민	누구나(법 제1조 제1항) 국민에 한정되지 않음	모든 인(人)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개인(every person)은 이 법에 따라 다 음과 같은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당해 정보가 공개대상 인 정보인 한 외국인을 별도로 차별하지 않는 취지로 해석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시청구권자로 ‘누구든지(何人も)’라고 규정하고 있음(법 제3조). 이에 따라 내국인, 외국인을 불문하고 자연인,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모두 청구권자가 됨.

구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호 주	일 본
공개 대상 기관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공문서에 포함된 자신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법 제12조) → 모든 개인	• 연방정부의 모든 행정기관 (5 U.S.C. § 552(f)(1)) 연방정부의 모든 행정관청, 군기관, 정부법인, 정부의 관리하에 있는 법인, 기타 연방정부 행정부의 모든 독립 기관 및 독립 규제위원회 포함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 다만 스코틀랜드 지방에 포함된 중앙정부 기구는 2000년 정보자유법 적용대상임. 공공기관의 결정권은 법무장관에게 주어짐.	① 연방의 행정청 이외의 연방기관이나 연방시설 (그들이 공공법상의 행정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이상 법 제1조 제1항)	• 공공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그 밖의 공법인 또는 그러한 서비스를 행하는 사법인	• 정보공개 대상기관은 법령에 의하여 연방, 주 또는 자치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모든 기관을 의미한다. • 규정된 행정기관을 보조하거나 그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의 입법에 의하여, 혹은 그 입법목적	• 행정기관(법 제2조 제1항, 시행령 제1조 제1항) ① 국가기관 1) 국회와 법원이 제외되어 있음. 2) 중앙행정기관(내각부에 설치된 기관, 「내각부 설치법」에 따라 내각부에 설치된 위원회 등의 기관)

부록: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p>3)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p> <p>② 지방자치단체</p> <p>③ 「공공기관운영법」상의 공공기관</p> <p>④ 각급 학교</p> <p>⑤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p> <p>⑥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특수법인</p> <p>⑦ 사회복지법인</p> <p>⑧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p>	<p>립적인 기관(연금보안센터 및 농업연금연구소의 문서 포함)</p> <p>⑥ 의회의 기관</p> <p>⑦ 스웨덴인들의 자치구인 올란드(Åland)의 행정기관과 올란드 내에 설치된 국가기관</p> <p>⑧ 독립적인 위원회, 협의체, 위원회, 실무단, 조사자,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지방자치단체 연감 및 명명 또는</p>	<p>연방의회 내지 연방법원은 연방 정보자유법(FOIA)상 공개대상 기관이 아님.</p> <p>• 주(州) 정부 기타 지방 정부는 연방 정보자유법(FOIA)상 공개대상 기관이 아님.</p>				<p>에 따라 설립된 비법인사단(위원회, 협의회, 하부-협의회 혹은 다른 단체)은 이 법률의 적용에 관하여 규정된 유권기관에 해당하지 않지만, 당해 유권기관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p>	<p>3) 국가행정조직법에 따른 기관(경찰청, 검찰청 등)</p> <p>4) 회계감사원</p> <p>5) 공내부 및 그 소속기관</p> <p>② 지방자치단체</p> <p>③ 「독립행정법인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법정법인인 등</p> <p>1) 각종 독립행정법인</p> <p>2) 국립대학법인</p> <p>3)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p> <p>4) 특수법인(일본중앙경매회)</p>

부 록

구 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호 주	일 본
	기관 또는 단체	<p>①, ②, ⑦ 등에서 정하는 기관의 결정에 의거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정된 기타의 유사한 기관들이 포함</p> <p>⑨ 법, 명령 등에 의거한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정된 법인, 기관, 재단 및 개인(공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p> <p>⑩ 북음주의 루터교 (Evangelical Lutheran Church)</p>						5) 허가법인 (일본은행)

부록: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공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법 제3조, 제2조제1호) - 전자문서로서 포함되며, 그 밖에 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도 공개대상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 영역에 속하는 공문서(법 제6조 제1항 각호)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일지에 대한 기재 또는 유사한 기록 ② ③ 및 ④에 규정된 것 이외에, 정보 제공 또는 평을 위한 안내장, 제안서, 탄원서등(부록 포함) ③ 용역 또는 조달계약 또는 입찰에 의거한 기타의 계약과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information”)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U.S.C. § 552(f)(1) 전자적으로 작성, 보유, 관리되고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정보공개대상인 연방 행정기관이 정부 기록 내지 문서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 (5 U.S.C. § 552(f)(1)(A)) 위 정보를 정 보공개대상인 연방 행정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당해 연방 행정기관 아닌 	공공기관의 모 든 정보 중 정보 공개 의무를 면제받는 면제 대상, 완전 면제, 제한적 면제가 있다. 또한 ‘제한적 면제’에는 ‘불이익 심사’와 ‘분류에 의한 면제’가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장방식을 불문하고 공적 목적에 사용되는 일체의 기록(법 제2조 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포크 아일랜드의 기록을 하거나 관련된 것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에 의하여 설치된 비법인 사단이 위원회, 협의회로 구성되는 기관 • 법원(노포크 아일랜드의 법원은 제외)은 규정된 유권기관으로 간주한다. • 행정적인 사안에 관련된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관의 직원 직무상 작성하였거나 취득한 문서, 도면 및 전자 기록(법 제2조 제2항) - 우리 나라 법 제가 “매체에 기록된 사항”도 공개대상이므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일본은 문서, 전자기록 등의 매체를 공개대 상으로 한다.

구 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호 주	일 본
		<p>이 있는 경우, 제공에 부수 및 되는 정보 및 그러한 제공을 고려하기를 위하여 준비된 기타의 의견 및 작성된 문서</p> <p>④ 정부 부처 및 기관의 권한의 범위 내의 예산발의의 일관된 전체를 형성하며, 중요한 결정이나 계획에 대한 대안, 이슈, 영향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연구 및</p>	<p>주체가 당해 연방 행정기관의 기록관리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정보 역시 포합됨</p> <p>(5 U.S.C. § 552 (f)(1)(B)).</p>				<p>심판소에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 및 안보 기관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록: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호주	일본
		통계 기타의 의견 ⑥ 의사록 ⑦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⑧ 당국의 결정, 발표, 법률문서, 계약 및 ①-③ 또는 ⑤-⑦에 규정되지 아니한 비망록, 의사록 및 기타의 문서들 ⑨ ①-③ 또는 ⑤-⑦에 규정되지 않은 문서 ⑩ 위원회의 보고서, 논문 및 일반인에 대하여 배포할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비공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공개 대상 정보(법 제9조 제1항 각호) 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밀 공문서(법 제24조 제1항 각호) ① 정부 외교통상위원회 의문서, 외무부장관의 정치적 평가, 외국과의 정치적 또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공개 대상 정보(5 U.S.C. § 552(b)(1)-(9))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방 또는 외교정책을 위해 비밀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공개 정보 중 ‘완전면제’ 대상에는 다른 정보를 통해 습득될 수 있는 정보, 대내 첩보국, 해외첩보국, 정부보안사령부 등의 국가 안보 기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 공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제3조) 1.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a) 국제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b) 연방군대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날짜, 보존장소, 형식, 매체를 불문하고, 공공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그 밖의 공법인 또는 그러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 -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 문서에는 전자 문서가 포함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공개 대상 정보(법 제5조 각호) ① 개인에 관련된 정보로서 해당 정보에 포함된 성명, 생년월일 그 밖의 개인을 식별할 수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p>②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p> <p>③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사항</p> <p>④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p> <p>⑤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p>	<p>경제적 협상 관련 문서 및 외부행정 분야의 암호화된 메시지(장관이 달리 결정할 수 있음)</p> <p>② 핀란드와 외국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의 관계에 관한 것 이외의 것</p> <p>①에 규정된 문서, 국제재판소, 국제조사기구 또는 기타의 국제기관에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한 문서, 외국</p>	<p>지가 특별히 허가되고 대통령령에 의해 실제 적절하게 비밀로 지정된 사항</p> <p>② 행정기관 내부의 인사 규칙 및 관행에만 관련된 사항</p> <p>③ 법률에 의해 공개가 면제된 사항</p> <p>④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비닉권이 인정되는 정보 또는 비밀에 속하는 상업</p>	<p>보유한 정보, 법정 기록, 의회특권에 의해 보호되는 정보, 공무원의 효과적 수행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개인 정보, 대외비를 조건으로 제공된 정보, 법적으로 공개가 금지된 정보가 있음.</p> <p>‘제한적 면제’ 대상에서 ‘불의의심사에 의한 면제’ 정보에는 국방, 국내관계, 국가의 경제적 이익, 감사법집행, 감사</p>	<p>군사적 이익과 그밖의 (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c) 내적인 또는 외적인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d) 제무, 경쟁, 규제, 담 당하는 행정청의 통제 및 감독 업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p>	<p>스를 수행하는 사법인이 생산하고 취득한 정보로 간주된다. 이러한 정보에 는 특히 소송 자료, 보고서, 기록(comptes rendus)연구물, 조서, 통계, 지침, 회람, 공문, 정 부문서 및 답변, 교신, 의견, 규정 그 리고 결정이 해당된다.</p>		<p>있는 것 또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는 없으나 공개됨으로써 개인의 권리가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p> <p>② 법인 그 밖의 단체에 관련된 정보 또는 상업에 영위하는 개인의 당해 사업에 관계된 정보로서 아래 각 목에 규정된 것.</p> <p>③ 공개됨으로서 국가안전을 해칠 우려,</p>

구 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호 주	일 본	
	계약·기술 개발·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 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 ⑥ 해당 정보에 포함 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⑦ 법인·단체 또는 개인 의 경영상·영업상 비 밀에 관한 사항 ⑧ 공개될 경우	의 당국, 자 연인 또는 법인 과 핀란드 공화국, 핀란드 시 민, 핀란드 주민 또는 핀란드에서 영업하는 법 인의 관계에 관한 문서 ③ (i) 범죄수사 를 수행하는 경찰 기타 당국, 검사, 조사와 감독 에 관한 책 임을 지는 당국에 대하 여 작성하는 범죄 보고서. (ii) 범죄수사 또	정보 내지 금융정보에 해당 되는 사항 ⑤ 행정기관과 의 소송관 계에 있어 행정 기관 상호간 내지 행정 기관 내부의 각 서 또는 서 신에 해당 되는 사항 ⑥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부당 하고 명백하 게 침해하게 될 인사 내 지 의료에 관한 정보에	기능, 공무의 효과적 보전과 사업상의 이익 이 있고, '분류' 에 의한 정보에는 공표 예정된 정보, 국가안보, 공 공기관에 의한 조사 내용, 정 부 정책 형성, 국왕과의 의사 소통, 환경 정 보, 개인정보 가 있음.	e) 재무에 대한 외적 통제와 관련된 사항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는 경우 f) 금지되어 있 는 대외경제 교류에 대한 보호조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는 경우 g) 진행중인 재판 절차의 진행, 공정한 절차에 대한 당사 자의 권리 또는 행사 법적 수사, 질서위반법				외국 또는 국제기관 등 의 근로관계 에 손상을 줄 우려 또 는 이국 또 는 국제기관 등과의 교섭 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행정 기관의 장이 인정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정보 ④ 공개됨으로 써 범죄의 예방, 진압 또는 수사, 공소유지, 형 의 집행 그

부록: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는 기소여부 결정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작성된 문서 및 소환장 청서, 소환장 및 피고인의 답변서 ④ 범죄 예방 및 범죄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범죄 수사, 수사하는 경찰 및 기타의 당국이 유지하는 기록물, 범죄예방을 위하여 작성된 보고서, 신원 및 여행할 권리	해당되는 사항 ⑦ 사법(司法) 목적으로 작성된 조사기록 내지 정보로서, 공개되는 경우 (i) 소송절차를 저해함이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경우, (ii) 개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iii)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부당하게 침해됨이 합리적으로 예		상의 수사 및 징계법 상의 조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의 공개가 공공의 안녕을 위협할 경우 a) 국제적 협상이나 b) 행정기관의 협의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가 실질적이고 조직적인 비밀보호에 관한 법규나 일반적인 행정규칙에 의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행정기관의 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⑤ 국가기관, 독립행정법인 등, 지방공공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또는 상호간의 협의, 검토 또는 협의에 관한 정보로

구 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호 주	일 본
		를 결정하거나 조사하기 위한 행정절차에서 취득된 사건의 기록, 타인의 신분 확인 정보, 어떠한 자에 대하여 발행된 특수한 신분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 또는 여행증서는 경찰, 국경수비대, 세관, 교정당국의 기술적 및 기술적 계획 및 방법들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	상되는 경우, (iv) 비밀리에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 지방정부, 외국의 행정기관, 관공서 또는 민간기관 등의 비밀정보원의 신원이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경우 및 사법당국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기록이거나 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하여 국가안전보		하여 규율되는 비밀유지의 의무 대상이 되거나 특별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공공기관이 자신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를 잠정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정보의 공개가 경제적 거래 또는 사회보장 또는 경제적 이익과 관련하여 연방의 재정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신뢰에 기초한			시, 공개됨으로써 슬직한 의견교환 또는 의사결정의 중립성이 부당하게 손상될 우려, 부당하게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 또는 특정한 사람에게 부당하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⑤ 경찰, 국경수비대, 세관, 교정당국의 기술적 및 기술적 계획 및 방법들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						⑥ 국가기관, 독립행정법인 등, 지방공공단체 및

부록: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p>는 문서</p> <p>⑥ 접근이 문제 해결을 저해하거나 당사자에 대한 피해 또는 고통을 야기할 절박한 이유가 없는 경우 고소사건에 관하여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고소인에 관계되는 문서</p> <p>⑦ 사람, 건물, 시설, 구조물, 데이터 및 통신 시스템의 보안계획의 실현과 관련이 있거나</p>	<p>장에 관한 조사 활동을 하는 과정에 서 작성한 기록으로서 공개의 경우 비밀정보원에 의해서만 제공된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v) 사법(司法)상의 수사 내지 소추의 지침, 기술이나 절차를 공개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공개가 법의 침탈을 초래할 것이 합리적으로</p>		<p>행위에 관한 제3자의 이익이 정보공개청구의 시점에 여전히 존재하는 경우, 그러한 신뢰에 기초한 정보 연방회의정보부(Bundesnachrichtendienst) 및 그 밖의 연방의 행정청이나 공공기관이 보안감사법(Sicherheitsüberprüfungsgesetz) 제10조 제3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들 기관에 대한 정보</p>			<p>지방독립행정법인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됨으로써 당해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상, 당해사무 또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문서의 의존부에 관한 정보(제8조) 개시 청구에 대하여 당해 개시 청구에

구 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호 주	일 본
	<p>그것에 영향을 주는 문서</p> <p>⑧ 사건 및 비상사태, 민사방위 및 사관건축사와 관련된 문서</p> <p>⑨ 비밀경찰 및 기타의 당국의 국가안전유지에 관한 문서</p> <p>⑩ 군사기밀, 군대의 물품, 조직, 위치 및 작전, 국가의 무장방어물 또는 기타의 방어물에 사용된 발명품, 시설, 설비 및 시</p>	<p>예상되는 경우, (vi) 개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위협에 노출시킬 수 있는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위 각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p> <p>⑧ 금융기관의 규제 또는 감독에 책임을 지는 행정기관을 대신하거나 이와 같은 행정기관에 제 공하기 위해 작성된 검 사, 운영 또</p>			<p>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p> <p>1.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것이 결정 또는 임박한 행정청의 조치의 결과에 치장을 초래할 경우(법 제4조)</p> <p>2. 개인관련정보 정보(법 제5조)</p> <p>3. 지적 재산권과 영업비밀 및 업무상 비밀 (법 제6조)</p>			<p>관계된 행정 문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답하는 것을 만으로도 불 개시정보를 개시하는 것이 될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행정문서의 존재 여부를 밝히지 않고 당해 개시청구를 거부할 수 있음.</p>

부록: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p>시스템, 국가안보에 중요한 기타의 사항, 방어진비 접근이 에 관한 문서</p> <p>① 통화정책 또는 외환정책에 있어서의 결정, 조치 또는 준비, 금융 정책, 소득 정책, 통화정책 또는 외환정책 분야의 결정이나 조치를 위하여 필요 한 금융 또는 소득 정책의 준비 또는 조사에 관한 정보</p>	<p>는 상황 관련 보고에 포함되거나 관련된 사항</p> <p>④ 지질학, 지구 물리학상의 정보에 해당하는 사항</p>					

부 록

구 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구 경	해 내	포 괄스	자 여	패 영
		<p>⑫ 금융시장 및 보험 운영자 및 금융시장과 보험시스템의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를 감독하는 당국의 제정 범상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작성된 보고서</p> <p>⑬ 국민경제에 관한 통계, 금융정책 이니셔티브, 운영계획 및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에 명백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p>						

부록: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호주	일본
		<p>⑭ 멸종위기의 동물 또는 식물 중, 중요한 자연서식지의 보호에 관한 정보</p> <p>⑮ 당국의 조사 또는 기타의 감독 업무에 관한 정보</p> <p>⑯ 조사 및 통계를 위한 기본 자료</p> <p>⑰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기타의 공기업 또는 기업, 기관 또는 단체의 영업 또는</p>						

부 록

구 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국 경	해 내	포 랑 스	자 여	해 외
		<p>직업적인 비 밀에 관한 정보</p> <p>⑱ (i) 국가, 지방 자치단체, 노 동 파트너 또 는 노동쟁의 당 사자로서 기타의 공기 업이 수집하 거나 취득한 정보 (ii) 농 업 보조금에 관한 협상에 대하여 국가 의 대리인이 수집하거나 취득한 정보</p> <p>⑲ 재판을 준비 할 목적으로 재판에서 소 송당사자의</p>						

부록: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호주	일본
		역할을 하는 당국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문서 ㉔ 사업 또는 직업적인 비밀에 관한 정보는 포함하는 문서 및 기타의 유사한 사업에 관한 정보 ㉕ 논문 또는 기타의 과학적 연구, 기술적 또는 기타의 개발 프로젝트 또는 그 평가를 위한 자료에 관한 문서						

부 록

구 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국 경	해 내	포 랑 시	자 여	패 영
		<p>⑳ 입학시험 또는 기타의 시험 또는 시험에 관한 정보 ㉑ 어떠한 자의 연간수입 또는 순자산에 관한 자료, 보조금 또는 수익의 근거가 되는 수입 및 자산에 관한 자료 또는 그 자의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자료 ㉒ 망명자 또는 망명을 요청하는 자, 거주중인 또는 비자에 관한 문서</p>						

부록: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호주	일본
		㉔ 복지 수급인 또는 노동 관리의 개별 고객, 수당, 지원조치,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에 부여되는 개별 고객에 대한 노동관리 서비스에 관한 정보, 어떠한 자의 건강상태 또는 불리한 조건, 그에게 부여되는 의료 또는 치료에 관한 정보, 그의 성적 행동 및 선호에 관한 정보						

부 록

구 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영 국	영 배	프 랑스	자 여	패 영
		<p>⑳ 범죄 용의자, 피해자 또는 형사 문제와 관련이 있는 또 다른 자의 사생활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 범죄 피해자에 관한 정보</p> <p>㉑ 범죄 용의자에 대한 정 신감정, 청소 년 범죄자에 대한 성격검 사 또는 구 금형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회봉사활동의 실현가능성에 관한</p>						

부록: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호주	일본
		<p>연구와 관련한 정보</p> <p>Ⓣ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가할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유가 있는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자, 재소자 또는 자유를 박탈당한 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행정적 문서 및 기록</p> <p>Ⓣ 어떠한 자에 대한 심리검사 또는 적성검사 또는 그 결과에 관한 정보,</p>						

부 록

구 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대 중	배	스	자	패
			<p>징집병의 할 당에 대한 평가, 피고 용인의 선발 또는 급여의 기준 설정에 관한 정보</p> <p>㉔ 학생복지 및 교육면제, 학생과 수험생의 시험결과, 학교 졸업장에 관한 문서, 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관한 구두의 평가를 포함 하는 기타의 문서, 입학 자격시험 수험생 내는 학교들 가운</p>						

부록: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호주	일본
		<p>핀란드 대학입학 자격시험위원회 (Matriculation Examination Board)의 중재 부서</p> <p>㉔ 어떠한 자에 의하여 부여된 비밀 전 화번호에 관한 정보 또는 모바일 통신장치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 개인의 주소, 거주지 또는 일시적인 거주지, 전화 번호 또는</p>						

부 록

구 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영 국	해 내	프랑스	자 여	패 널
		기타의 연락 처에 관한 정보 ② 어떠한 자의 정치적 신념 또는 사적으 로 표현된 관 견해에 관 한 정보, 생 활방식, 자발 적 단체에의 참여, 관심, 가족생활 기 타 유사한 개 인적 환경에 관한 정보						

구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호 주	일 본
신 청 방 법 정 보 공 개 절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 또는 구두로 가능(법 제10조) • 서면의 경우 ①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②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기재해야 함 • 구두의 경우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 등은 정보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을 신청하는 자가 문서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는 경우, 당국의 재량권 행사 또는 결정에 필요한 한, 자신의 이름을 밝히거나 신청 이유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법 제13조 제1항 3문). • 다만, 기밀문서 등에 대한 접근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 용도, 정보보호를 위한 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행정기관이 신청방법 및 비용 등을 사전에 정하여 공표(5 U.S.C. § 552(a)(4)(A)(i)) • 공개청구 대상 정보를 식별가능할 정도로 합리적 모사 (“reasonably describe”)하면 충분하며, 기록 내지 문서를 특정하지 않아도 됨(5 U.S.C. § 552(a)(3)(A)(2)(i)) 	<p>서명신청서의 제출에 의한 공개. 정보공개 신청서는 이체일로 대체할 수 있음.</p>	<p>특별한 규정 없음(서면, 구두로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최고행정법원과 행정법원의 의견, 제정법원법전 제L.141-10조에 규정된 회계법원 문서, 같은 제정법원법전 제L.241-6조에 규정된 지방회계법원의 문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래위원회가 그의 조사, 심리, 결정의 권한에 의해 작성되고 보호유하는 문서, 공적생활의 투명성에 관한 2013년 10월 11일 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개 대상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에 관련된 정보 - 사생활의 비밀에 관련된 정보 - 국가안보 혹은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 내각 문서 - 법의 집행 및 공공안전을 보호하는 사인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 법률에 의하여 비밀유지가 보장되는 정보 - 의회 예산사무실 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법 제4조 제1항) 또는 전자신청 가능(일본 총무성령 제39호 제3조) • 양자 모두 ① 개시청구를 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주소 및 법인 기타 단체는 그 대표자의 성명, ② 행정문서의 명칭 기타 개시청구와 관련된 행정문서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제4조 제1항), ③ 개시 실시

구 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호 주	일 본
	<p>청구조서를 이 작성하여 이 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 인하여야 함.</p>	<p>등을 설명해 야 함(법 제 13조 제2항).</p>				<p>2013-907 법 물 (이해충돌 방지 등을 규 정한 법률) 제20조가 규 정한 공적생 활 투명성을 위한 고등청 의 임무수행 범위 내에서 동 위원회가 자신의 조사 권한에 의해 작성되고 보 유되고 있는 문서, 공중보 건법전 제 L.6113-6조에 규정된 보건 기관 인증보 고서 작성 이 전의 문서, 동 법전 제L.1414-</p>	<p>- 문서의 공개 가 의회나 법원을 모독 하게 되는 경우 - 영업비밀 혹 은 상업적으 로 가치 있 는 정보 - 선거인 명부 및 관련 문서</p> <p>• 조건부 비공 개 대상정보</p> <p>- 공공이익을 위하여 공개 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p> <p>- 연방정부 혹 은 노포크 아일랜드 정 부의 재정적 혹은 재산상</p>	<p>방법에 관한 사항(법 제14 조 제2항)</p>

부록: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익 - 기관의 특정 업무 - 개인의 사생활 관련 정보 - 사업에 관련된 정보 - 연구에 관련된 정보 - 경제에 관련된 정보
3조에 규정된 보건기관 종사자의 인증 이 전의					
일본					

구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호 주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법 제2조제2호) • 사본 교부(법 제2조제2호) • 전자적 공개(법 제2조제2호, 호 법 제1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에게 구두로 내용을 설명하고 검토, 복사 또는 청취되도록 서류를 교부하거나, 사본 또는 출력물을 발행함. 문서의 분량으로 인해 복사가 곤란하다는 사정 등이 없는 한, 신청된 방식대로 허가해야 함(법 제16조 제1항) • 당국의 결정은 전산화한 공공 정보의 경우는 자기 매체 또는 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및 사본 교부 (“public inspection and copying”) (5 U.S.C. § 552(a)(2)) • 공개청구 정보 문서 내지 기록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 전자적 방식을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공개 청구자가 희망하는 형태와 방법으로 공개 (5 U.S.C. § 552(a)(3)(B)-(C)) • 단, 정보공개 		<p>정보제공(구두, 문서, 전자적 방식. 법 제2조 제2항, 제7조 제3항) 문서의 열람(법 제2조 제2항) 그 밖의 방법 (법 제2조 제2항)</p>	<p>문서(인증평가 과정에서), 2001년 사 회보 장 재 정 에 관한 2000년 12 월 23일 제 2000-1257호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보건기관 들에 대한 감사 보고서, 특정한 을 위하여 시행 된 서비스제공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실제 작성된 문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 청구는 반드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로서 청구 - 이 법률의 목적에 따른 청구임을 명시 - 기관이나 장관이 특정한 용이하도록 문서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재 - 청구인에 대한 통지를 수취할 수단을 명시하여야 한다(전자우편 주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사본교부, 전자적 공개(법 제14조 제1항)
	공 개 방 법							

부록: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p>자적 형태의 사본을 발부 하여 제공(법 제16조 제2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이 허용되는 자에 대한 개인정보의 접근은 사본 또는 출력물, 전자적 형태의 사본으로 접근을 허가하는 것이 가능(법 제16조 제3항) 	<p>청구에 대해 문서로 답할 의무 또는 정보공개 청구에 답하기 위해 별도의 목록 또는 통계 등 형태의 기록이나 문서를 새로이 작성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 청구 방법 - 기관의 사무직원, 혹은 장관에게 현재 관에 계 현재 전화 번호부 등에서 명시된 중앙 혹은 지역 사무실로 신청 - 기관 주소로 선불 우편신청 - 기관이나 장관이 명시한 전자우편 주소로 전자우편 발송 	

구 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호 주	일 본
부 분 공 개 가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공개 의무 -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분리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공개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함 (제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공개 가능 - 문서의 일부만 기밀인 경우, 기밀인 부분도 공개하지 아니하고도 접근이 가능한 때에는 문서의 공적 부분에 대한 접근이 허용 (법 제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공개 허용 (5 U.S.C. § 552(a)(1)) -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분리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p>비밀유지가 필요한 정보나 누설되거나 과도한 행정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정보공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분 공개 허용 (법 제7조 제2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이메일도 가능) - 청구대상 정보를 정확히 적시해야 함. 정보공개법 제2조에 따라 행정청은 그 일반성 또는 불명확성 때문에 신청된 정보를 가려 낼 수 없는 그런 정보에 답신하여야 할 의무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혹은 장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중에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열람 및 사본 교부 -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한다. - 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다른 웹사이트, 주소의 링크를 웹사이트의 링크를 웹사이트에 공개한다. -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설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공개 의무 -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분리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함(제6조 제1항).

부록: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 결정시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통지(법제13조제1항) • 비공개 결정시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법제13조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거부결정시 ①거부사유, ②자신이 당국에 의하여 결정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③서면 접근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자신이 그 당국에 전송된 문제를 처리할 것인지의 여부를 물어야 함. ④ 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통지하여야 함 (법제14조 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행정기관이 관련 절차와 방법 등을 사전에 정하여 공표(5 U.S.C. § 552 (a)(4)(A)(i)) •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후 20일 이내에 공개하고, 비공개의 경우 사유와 함께 불복절차를 고지해야 함(5 U.S.C. § 552 (a)(6) (A)(i)) 	요청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해당 공공기관은 근무일 기준으로 신청서가 접수된 지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2극적 정보관계에 관하여는 규정없음. 3극적 정보관계에서는 문서로 제3자에게 결정 통지(법제8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의 방식은 청구인이 선택할 수 있다. 즉석에서의 열람, 종이의 복사물 또는 전자적 저장매체 등을 통한 공개 중에 청구인이 원하는 대로 공개가 가능하다 : a) 즉석에서 무료로 열람에 의해 (문서 보존을 위해 그 열람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는 제외), b) 재생산이 문서보관을 해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공개의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이나 장관이 다음과 같이 결정할 경우 - 비공개문서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절하는 경우 - 문서에 대하여 접근권을 부여하는 것이 청구와 관계 없는 정보를 공개하게 되는 경우 - 기관이나 장관이 삭제된 통해 수정된 사본을 준비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부 및 일부 공개 결정시 그 취지 및 일시, 장소, 개시방법, 수수료 등을 명시하여 통지(법제9조제1항 및 시행령 제9조) • 비공개결정시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법제9조 제2항)
	정 보 공 개 어 부 결 정 의 통 지							

구 분	한 국	핀 란 드	미 국	영 국	일 본
		<p>피 랑 스</p> <p>지 않는다는 행 조건으로 의해 정청에 의해 저 활용되는 저 동 그 장매체에 또는 그 일한 또는 는 저장</p>			<p>호 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정본에 대 한 정보공개 의 의무가 있는 경우 -수정된 사본 이 청구와 무관한 정보 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기관이나 장 관이 수정된 사본을 마련 하는 것이 가능할 때 -수정의 성질 및 정도 -문서를 수정 하는데 소요 되는 비용 -청구인이 수 정된 사본에 대한 접근권 을 거부할 것

부록: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대한민국	핀란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호주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청구 및 청구인과의 상의에 비추어) - 기관이나 장관의 일부공개 의무 - 수정된 사본을 준비해야 하며 - 청구인에게 수정된 사본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특정	프랑스	호주	일본
사 전 공 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표의무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② 국가의 정책에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③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하여 정보, ④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의 일반적 공표규정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경제의 발전에 관한 통계자료, 경제정책에 대한 새로운 계획 및 세부사업계획, 자본 및 금융시장에 대하여 명백하게 영향력을 갖는 기타의 유사한 문서들은 제6조 및 7조에 규정된 절차를 거친 후 일반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공표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청구가 20일 이내에 공개하고, 비공개 의 경우 이 유와 함께 불복절차를 고지해야 함 (5 U.S.C. § 552(a)(6)(A)(i)) 		관련규정 없음	<p>매체와 양립가능한 저장매체에 복사한 것을 청구인의 비용으로(그 비용은 명령에 규정된 조건 하에서 이러한 재산상의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한에 서) 교부하는 것에 의해, c) 문서가 전자적 형태로 처리가능할 경우에 무료로 전자메일 형태로 이루어진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공개시의 통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정된 사실이라는 근거 - 삭제된 사실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표의무 규정 존재하지 않음. 다만 법 제24조에서 “정부는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의 총합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가 적시에, 또한 적절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명백하게 공개되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제공에 관한 시책을 충

부록: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호 주	일 본
	정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공개 범위, 주기, 시기, 방법 등을 미리 공표하고 그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함(법 제7조 제1항).	이야 함(법 제8조).						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고 주의적, 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구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호 주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까지 연장 • 공개결정 없음 (현행법에서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주 이내 • 신청 문서의 수가 많은 경우, 기밀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조치 또는 비정상적인 양의 작업을 요하는 문 제에 대한 검토, 결정에 대한 다른 유사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까지 연장 가능(법 제14조 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행정기관 이 비용 관련 액수, 납부방법, 면제사유 등을 사전에 정하여 공표 (5 U.S.C. § 552(a)(4)(A)(i))하되, 합리적 범위 내의 비용이어야 함. • 공익과 관련된 사항으로 서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상업적 이익 과 무관한 경우에는 비용을 면제해야 함(5 U.S.C. § 552(a)(4)(A)(iii)) 	<p>신청서가 접수 된 지 20일 이내에 결과통보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한을 연장할 수 있음.</p>	<p>청구가 있는 때로부터 1개월 이내(별 제 7서 제5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에 대한 청구가 본 제 6조의 적용으로 전달가능 하지 않은 기술 (記述 mentions)을 내포하는 문서에 관한 것 이더라도 그 기술부분을 분리하거나 리가 가능할 때에는 이러한 숨김 또는 분리 이후 청구인에게 전달된다(동법 제6조 I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부의 통지 -청구와 관련 하여 문서공개에 대한 거부 의사 -실무상 거부 사유 제시 - 청구인이 일정 기간 상담 할 수 있는 기관의 사무 관이나 장관 사무실의 직원 고지 - 청구인이 상담 직원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 고지 - 청구인이 상담 직원과 상담할 수 있는 기간(상담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까지 연장 (법 제10조) • 공개결정 간 주 규정은 없음. 	
공 개 기 한								

부록: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호주	일본
							<p>간)이 청구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것 고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 수정에 대한 보조 조치 • 청구인이 상담기간 내에 통지에 따라 상담 직원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 기관이나 장관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실무상 거부사유가 없도록 청구내용을 수정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 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호 주	일 본
비 용 부 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비범위에서 청구인 부담 (법 제17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서의 복사, 출력의 형태로의 정보접근, 기술적인 터페이스 또는 전자적 또는 그와 유사한 방식에 의한 정보에 대한 접근 지원, 당국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검색 및 전달에 대하여는 수수료 부과 (법 제3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기관의 장에게 불복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불복 신청에 대해 행정기관은 2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함. 불복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기각결정을 한 책임자의 성명과 직위 고지, 이후 사법적 구제절차를 통한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함. 단, 행정기관 		<p>개인에게 귀속될 수 있는 직무행위 대해 수수료와 경비 징수(법 제10조 제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 공개법 제2조에 따라 정보 공개를 청구 받은 유관 행정청은 한 달 내 답신을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넘기면 침묵은 묵시적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정보 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의료 정보의 경우 5년 미만된 정보인 경우에는 8일이고 5년 이상 된 정보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은 법령 상 의무가 있거나 허가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정보공개 대상자 일반 대중 특정 계층의 사람들이나 범인격이 있는 단체 기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웹사이트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다운로드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비범위에서 청구인 부담 (법 제16조제1항)

부록: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이 공개청구에 대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기간 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적 구제절차에 따른 불복신청 없이 사법적 구제절차 이용 가능(U.S.C. §552(a)(6)(C)(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적 구제절차 (5 U.S.C. §552(a)(4)(B)) 			는 1개월이 기한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다른 웹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공개함 -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에 관하여 웹사이트에 공개함 	

구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호 주	일 본
<p>불복 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일 이내 이의신청(법 제 18조제1항). 7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지(법 제18조제 2항) • 행정심판(법 제19조제1항). 이의신청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청구가 능(법 제19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소송절차법에 의한 상소(법 제33조) 		<p>신청된 정보의 공개가 거부되었을 경우에는 여러 단계의 이의신청 절차가 있음. 최초 의 이의신청은 해당기관에게 접수시키며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은 반드시 그에 대한 ‘내부심사’(internal review)를 진행시켜야 하며, 이에 대한 결정이 언제 될 것 리지 않게 될 것 인지를 신청자에게 통고해 주어야 함. 내부심사는 공개</p>	<p>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의무이행소송제기 가능(법 제9조 제4항) *정보공개관련 쟁송에 관한 별도의 규정 없음 (행정법원법준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의 목적 또는 목적 결정 동의 목적적 동의를 인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사법(私法)의 것이라 하더라도 공공서비스관리 를 담당하는 기관의 이름 으로 내려진 모든 개인적 결정은 이러한 결정이 그에게 사전에 통지되었을 때만 대항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에 관한 기관이나 장 관은 개인에게 접근권이 부여된 날부터 업무일 10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 여야 한다. - 업무일 에는 다음의 요일을 제외한다. 토요일, 일요일이 section 에 따른 정보 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휴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일 이내 불복신청(법 제 18조, 행정불복심사법 제 45조). 2주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지(법 제 21조, 제13조 제3항) • 행정사건소송법 제12조 제 4항에 의하여 불복신청에 대하여 행정소송가능(법 제21조).

부록: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p>거부 결정을 내린 당사자 이외의 직원으로 상급직원에게 말간다. 내부심사는 보통 2~3주 안에 마무리되지만 복잡한 경우, 특히 공익성심사가 필요한 사안일 경우에는 최대 6주까지 소요될 수 있음.</p> <p>내부심사를 통헤서도 애초의 공개 거부 결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신청자는 이를 정보관에게 항소할 수 있음.</p>				

구	판	한	국	핀	란	드	미	국	영	국	에	뎀	부	프	랑	스	피	어	패
									<p>신청자든 정 고기관이든 정 보판무관이 내 려 결정에 대 해 동의할 수 없다면, 3차 이 의신청을 통해 상고할 수 있 음. 정보공개심 판소에서 이 3 차 이의신청을 다룸. 정보공개 심판소의 결정 은 최종심급의 판단으로 사법 적 구속력을 가짐.</p>										

부록: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 청구된 사실의 통보 (법 제11조제3항), 3일 이내에 공개 거부 요청가능 (법 제21조제1항) • 공개사실의 통지 및 행정쟁송 (법 제21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공개 또는 기밀제한의 해체에 있어 관련 정보의 당사자의 동의를 요구 함(법 제16조 제3항, 제26조 제1항 2호, 제28조 제1항, 제29조 제1항 2호). 			<p>정보 공개를 배제할 보호가 치있는 이익을 갖는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가 부여 (법 제8조 제1항)</p> <p>공개결정의 통지, 결정이 존속력을 발한 때로부터 2주일 이후에야 정보 공개 가능 (법 제8지 제2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비용의 징수의 요건 - 개인이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직접 다운로드 받지 않음 - 개인에게 접근권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충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 청구된 사실의 통보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법 제13조), 2주일 이내에 공개 거부 요청가능(법 제13조제3항) • 불복신청(법 제20조) 및 행정소송(법 제21조)